

##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이해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팀

#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이해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팀

## 차례

1. 사상전향제도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가?	/ 2
2. 사상전향의 역사	/ 3
2.1. 사상전향제도 개괄	/ 3
2.2. 일제하의 사상전향제도	/ 4
2.3. 해방후 사상전향제도	/ 6
3. 사상전향공작전담반	/ 15
3.1. 배경	/ 15
3.2. 1970년대 초 남북관계와 전향공작의 관련성	/ 16
3.3. 전향공작전담반의 구체적 활동	/ 18
4. 비전향자에 대한 불이익과 전향을 거부하는 이유	/ 27
4.1. 비전향자에 대한 불이익	/ 27
4.2.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이유	/ 27
5. 사상전향제도의 법적 근거 및 그 비판	/ 29
5.1. 법 규정	/ 29
5.2. 법무부 예규	/ 31
6. 쟁점	/ 37
6.1. 전향공작 과정에서 죽은 이들도 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인가	/ 37
6.2. 준법서약서는 전향과 다른가	/ 37

### 첨부자료

1. 사상전향 약사	/ 43
2. 사회안전법	/ 50
3. 사회안전법시행령	/ 55
4. 사회안전법시행규칙	/ 61
5. 사회안전법에 관한 헌법소원	/ 78
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92.2.15제기, 1995.5.25.결정)	/ 81
7. 현행 전향 관련 법령	/ 84
8. 과거 전향관련 법령조항	/ 86
9. 사상전향 관련 교정예규	/ 93
10.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현행법 및 국제조약 조항	/ 106
11.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박상천 법무부장관(특별기고) /[동아일보] 1998-07-30	/ 111
12. 강용주의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98. 8. 15)	/ 112
13. 각 나라의 '사상전향제도' 존재 여부	

### 첨부서류

- 좌익 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 예규관 제180-161(73.8.2)
- '80년 7월 11일 청주보안감호소 살인 고문 진상 보고서' 유인물
- 준법서약서 사본(2매)

## 1. 사상전향제도를 왜 이야기해야 하는가?

어떤 나라의 인권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감옥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권리가 다 보장된 다음에야 시선이 가야 할 존재, 같이 있기에는 무언가 두려워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 그런 범죄자를 가두어 두는 곳이 감옥이다. 그곳의 명칭을 감옥, 형무소, 교도소 등 등으로 바꾼다고 해도, 사람을 가두어 둔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격리되어야 할 부류들이 존재한다. 소위 ‘빨갱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생각, 아니 이념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화해할 수 없는 존재, 박멸의 대상으로 지칭되는 이들이 빨갱이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말은 아주 용기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배제될 각오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우리가 사상전향제도를 이야기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인권이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소수자를 향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한다면 사상전향제도를 비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장 최악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빨갱이와 사회의 잊혀진 존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의 결합, 그곳에서 이루어진 사상전향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낙인이다.

사람의 생각을, 사상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꾸어버리겠다는 국가권력의 발상, 그런 발상은 비단 감옥에 갇힌 빨갱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로 지탱된다고 해도 그 정신은 소수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소수자의 존중이 인권인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의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는 인권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다름 아니다. 사회의 다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는 인권이 숨쉴 공간이 없다. 세계사에서 그런 사회를 나치즘이나 파시즘, 스탈린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생각과 사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대의 광기, 더 나아가 힘으로 생각과 사상을 바꾸겠다는 무모함, 마침내는 생각과 사상이 바뀌었음을 선언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을 파멸시켜 버린 사상전향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인권으로 이름으로 비판해야 한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상범은 특사(특별사동), 즉 ‘감옥안의 감옥’에 갇혀 잊혀진 존재, 잊혀지기를 강요당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정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였다. 특사에 갇혀 있는 이들도 인간이라는 자각이 곧 인권의 싹튼이었고, 생각이, 사상이 다르다고 한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 속에서 인권을 보장한 헌법의 문구들이 온전히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사상전향을 통해 ‘빨갱이를 박멸’하려는 국가권력의 무모함을 몸으로 버티며 사상전향을 거부한 ‘특사의 사상범’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냉엄한 역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 2. 사상전향의 역사

### 2.1. 사상전향제도 개괄

전향(轉向)은 방향전환의 약어로서 특정의 가치, 신념체계(특히 정치적 가치신념체계)를 가진 자가 이전의 가치신념체계를 버리고 다른 가치신념체계로 변화하는 사상적 회심현상(回心現象)을 이르는 말이다.<sup>1)</sup>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상전향제도에서의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2)</sup>

사상전향제도는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인 등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그 사상을 개조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전향은 ‘사상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천황제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 종교인,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사상전향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특정 가치, 신념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가치, 신념이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체제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sup>3)</sup>

전향이란 말은 원래 일본의 사상검사들이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후쿠모도 가즈오의 방향전환론에서 따온 말이다. 일본의 사상검사들은 좌익의 용어를 빌려서 변절이나 굴복과 같이 사상을 버리는 자들의 자존심을 거슬리게 하는 용어 대신에 그럴 듯한 말을 만들어내 마치 이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 상황에 대해 주체적인 대응인 양 호도했다. 그리하여 정체모를 외국사상에 혐혹되었던 자가 천황제의 정통사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전향’ 개념은 확립되었다. 1933년 6월 일본 공산당의 거물 사노 마나부 등의 공개적인 전향선언이 발표된 이후 일본 열도에서는 옥중에 있던 공산주의자의 90%가 전향하는 등 전향이 하나의 시대조류를 형성했다.<sup>4)</sup>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된 사상전향제도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정치범을 시베리아수용소에 수용하고 실시한 사상개조작업이나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 지식인에 대해서 대규모로 시행한 농촌강제이주(소위 하방) 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국가의 안전 또는 이익보호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것이나 실제로는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사상개조수단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현재 실시되는 것 중에서 사상전향제도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아비판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5)</sup> 그러나 나치의 독일이나 스탈린치하의-소련,-기타 독재권력이 수립된 국가에서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고문과 협박을 동원하여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인간의 내심을 고백케 하여 그 고백에 따라 죽을 때까지 무한정 철장속에 가두는 사상전향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sup>6)</sup>

미국 형법에는 간첩죄, 반역, 치안방해 및 과괴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우리나라 형법의 유사조

1)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24권, 동아출판사, 1983, p. 506

2) 홍경령, 1990, 「사상범 전향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법학석사학위논문 개인用(思想の科學研究會 편, 『共同研究, 轉向』, 東京:平凡社, 昭和 37년(1962년)).

3) 서준식, 「반민주적 전향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평화신문』, 1988. 7. 31~8.6.

4) 서준식,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빨갱이에게도 인권은 있다」, 『한겨레 21』, 2001.11.21.

5) 홍경령, 1990, 11쪽.

6) 홍경령, 30쪽.

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전복활동통제법이나 공산주의자규제법은 1950년대 냉전과 메카시 선풍을 배경으로 적용되다가 1960년대 일부 조항(메카렌법 스미스법 등)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교할 수 없다.

대만의 경우,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국가 분열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어겼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정치범이나 양심수라고 부를 만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다.

독일에도 1953년까지 공산당 금지법이 있었으나 60년에 폐지되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사상전향제도의 대상이 된 이들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전쟁 중의 유격대 활동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간첩이라 부르는 남파공작원들, 다음으로는 통혁당, 인혁당, 남민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등 이남의 자생적인 변혁운동의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투옥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나 고국에 유학왔던 재일동포들 중에서 간첩으로 얹힌 사람이다.<sup>7)</sup>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경우 간첩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다고 민가협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sup>8)</sup>

이들 중에 1970년대의 가혹한 전향공작으로 많은 좌익수들이 전향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향공작을 버티고 비전향으로 출소하였거나 형기가 만료된 좌익수들을 전향시키기 위해서 1975년 사회안전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안전법은 한마디로 전향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국가권력의 의지를 담은 법이었고, 청주보안감호소를 새로 지어 형기가 만료된 비전향 좌익수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였다.

1988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서준식씨가 비전향으로 출소하면서 사회안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정부는 국내외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안전법을 1989년 폐지하였다. 보안감호소에 갇혀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은 사회안전법 폐지로 모두 출소하였다.

교도소의 특별사명에 독거생활을 해야 했던 장기수들은 특별사면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풀려났다. 이 인모씨가 김영삼 정부 초기에 북송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198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으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상전향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 1998년 7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건국 50돐 기념 8.15특사와 관련해 공안사법에 대해서도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전향서와 다름없어 거부하여 비전향장기수는 대부분 석방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9년 비전향장기수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고 모두 석방되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의 열렸으며, 9월 2일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송환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

## 2.2. 일제하의 사상전향제도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상전향제도 실시는 일본 국내에서와 같이 사상운동을 탄압하는 것도 목

7) 한홍구, 「빨갱이에게도 인권은 있다」, 『한겨레21』, 2001. 11. 21.

8)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강희철간첩사건 대법원 주심 맡았던 박우동 변호사, 『시사저널』 1995.8.11. 자. “이 사건은 내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훌가분하다… 사실 나는 그때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무죄로 번복하려 했다…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도리가 없다. (유죄를 입증하게 만든 검찰의 물증은 무엇이었나?) 회고록에서 말했듯이 누구나 가질 법한 일제 만년필 1개와 겨울 스웨터 하나였다.”

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조선의 완전지배를 위한 민족말살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있었고, 독립운동의 예방, 탄압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사상범뿐만 아니라 약간의 민족적 요소를 지닌 운동에 대해서도 치안유지법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사상전향이 강요되었다. 창씨개명이나 신사참배, 조선어 및 조선역사 강의 금지 같은 정책도 사상전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933년 후반 일제 사법성 당국은 전향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행동적 방향전환 -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버리지 않고 그 실천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 한다.

· 이론적 방향전환 - 일본 공산당의 강령(예, 전황제 폐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 한다.

· 이론적 행동적 방향전환 - 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그 행동, 실천을 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종교적 방향전환 - 종교적 이유로 사상이 변화는 것으로 앞의 방향전환의 특수형태에 해당한다.

1933년 12월 행정당국은 치안유지법 위반 수형자를 다음과 같은 개전의 상태에 의해 분류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 전향자 : 국체변혁사상 또는 혁명사상을 방기한 자를 말하고, 이에는 ①혁명사상을 포기하고 일체의 사회운동에서 이탈할 것을 서약한 자 ②혁명사상을 포기하고 장래 합법적 사회운동에 진출한 자 ③혁명사상을 포기하고 장래 합법적 사회운동에 대하여 태도미정인 자로 분류한다.

· 준전향자 : ①품고 있는 혁명사상에 동요를 보이고, 장래 그것을 포기할 것이 예견되는 자, ②혁명사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일체의 사회운동에서 이탈할 것을 맹세한 자

· 비전향자

1936년 형사국 보호국장은 사상범보호관찰심사회에서 전향을 심사할 때 완전전향(모든 혁명사상을 버린 자), 준전향(혁명사상의 방기 여부가 모호한 자), 비전향(혁명사상을 버리지 않은 자)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후 사법성은 완전한 사상전향을 ‘혁명사상을 버리고 애국정신에 눈을 뜨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보호관찰소 관계자 사이에서는 ‘일본全身을 체득하여 실천 궁행하기에 이르는 것’을 전향의 최종단계로 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사상통일을 강요하기 위해 ‘일본정신을 받아들여 그의 애국주의를 전면적 증명할 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1940년 한 지방재판소의 판사는 전향의 적절한 기준은 ‘그 臣民이 천황 폐하를 살아있는 신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있다고 하였다. 1941년 9월 16일의 사법성 형사국장통첩 예방구금제도 활용에 관한 건에서 제시한 전향의 기준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민의 도를 궁행하고 있는 것’이였다.

또한 일제는 1936년 12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제정한 것을 시발로 사상범에 대한 감시를 범제화하였다. 이어 1938년 7월에는 사상전향자들로 시국대응전선(全鮮) 사상보국연맹을 결성했으며, 다시 1941년 1월에는 사상보국연맹을 대화숙(大和塾)으로 개편하였다. 대화숙은 일본정신의 현양과 내선일체 강화 및 전향자의 선도 보호 등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전향자들을 입숙시켜 군대식 기율로 관리하면서 황민화 교육을 실시했다.<sup>9)</sup>

일본 국내에서는 1941년 치안유지법 2차 개정 때 예방구금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1928년, 29년에

대량 검거된 거물 공산주의자들이 형집행을 마치고 출옥하게 되자 이들의 위험성을 이유로 실시된 것이다. 치안유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형종료로 석방되지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해도 재범의 위험을 큰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2년간 예방구금을 시행하였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소의 결정으로 간신할 수도 있었다. 예방구금소에 의해 형기를 마친 사상범에게는 일반사회와 격리되어 수용되는 보호교도소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사상의 개선, 교정이 강력히 실시되었다.

이러한 예방구금제도는 이 땅에서는 일본보다 2개월 앞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으로 제도화된다. 1941년 2월 공포되고 3월 10일 시행되었다. 1월에 설치된 대화숙과 함께 태평양전쟁 동안 식민지조선에서의 전향공작은 최고조로 달하게 된다.

일제는 전향할 경우 여러 혜택을 주었다. 먼저 수사과정에서는 사상범 용의자에 대해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전향을 강요하였고, 전향할 경우 검찰관이 이를 보석 결정의 중요 요건으로 삼았다. 또한 사상계 검사는 전향할 경우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유보처분 등의 보상을 주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상전향자에게는 재판소에 의하여 감형조치, 특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형무소에 수감중에는 고문을 통한 전향강요는 없었으나, 비전향자에 대한 형무소 내의 가혹한 규율(적은 식사량, 운동량 제한 등)로 인한 고통과 누진처우대상 제외로 인한 장기간 구금의 무기로 전향을 유도하였다.

일본의 좌의들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정신으로 돌아간다는 명분 등을 앞세워 전향을 합리화하였지만, 조선인 사상범들에게 그런 합리화가 쉽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일제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향은 일제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상의 문제 이전에 민족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조선에서의 사상전향은 일본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폭력과 강제를 수반했고,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즉, 일제는 일본인들이 전향하면 같은 편으로 받아들였지만, 조선인의 경우는 전향을 하더라도 같은 편일 수 없었다. 일본에는 없는 사상보국연맹이나 대화숙 같은 전향자 관리기구가 조선에 출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2.3. 해방후 사상전향제도

#### 2.3.1. 5.16이전

패전과 함께 일본에서는 미군정에 의해 치안유지법이 폐지되면서 사상전향이라는 장치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형사령 및 치안유지법의 폐지로 전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사상전향제도가 재등장하게 된다. 미군정은 대좌의투쟁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거의 모든 친일경찰들을 재등용하면서 이들에 의해 전향제가 실시된다.

해방 직후 공산당 및 민청, 여맹 등의 좌의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미군정 초기에는 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탄압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46년 11월 공산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된 이들에 대해 연말에 검거령이 내려지고, 미군정에 의해 남노당이 불법화되었다. 좌의활동으로 검거된 이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무지막지한 고문이 가해졌다. 수사과정에서 전향시켜 밀정으로 만들거나 탈당의 형식으로 전향을 강

요하였다. 전향서의 작성이란 형식은 없었으나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탈당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신문광고란에 게재하였다. 탈당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전향'이 정치범에게 가해지는 일제의 억압을 연상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좌익과 진보적 인사에 대한 무차별인 탄압이 이루어진다. 국제연합 조선위원회는 '1949년 한해에만 118,621명을 검거, 투옥하였고,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였고 보고하고 있다. 대규모로 검거한 좌익들에 대하여 탈당형식 등을 취하는 대규모의 전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69년 6월 5일 보도연맹 중앙본부를 결성하였다. 보도연맹에는 남노당에서 탈당하거나 그 외곽단체에서 탈퇴한 이들과 빨치산에 끌려가 부역한 단순동조자까지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1950년 3월 철도노조 조합원 5천명이 가입하면서 1단계 조직사업이 끝나게 된다. 당시 맹원수는 35만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전쟁과 함께 거의 모두 집단학살에 처해지게 된다.

전쟁기간 중에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치산이나 포로가 된 인민군에 대한 체계적인 전향 강요는 없었으나, 다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을 석방시키거나 형을 감경하기도 했다.

휴전협정 성립 이후 형아 확정된 좌의수에 대하여 형무소 당국이 전향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몇 개 형무소에서 지도급 좌의수에게 '진술서'나 '자서전'이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전향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형무소 당국이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의 충성 여부를 묻는 사상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1954년경부터 몇 개 형무소에서 좌의수들의 소내 조직사건이 일어났으며, 1955년 2월 15일에 대전형무소에서 발생한 좌의수들의 탈옥예비음모사건(2.15사건)은 가장 규모가 커 500명에 입건 20명, 조사과정 고문처사도 3명에 이른다고 한다.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4,000명 이상의 수형자가 있었으며, 그 중 좌의수는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일오사건' 이후 전향, 비전향자를 분리하여 수용하였고, 백지에 전향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즉 '전향서 작성'이라는 형식을 통한 사상전향의 강요는 1955년 이일오사건 무렵에 시작되나 1956년에 제도화된다.

법무부는 1956년 4월 6일 '좌의수형자 동태조사 보고에 관한 건'이란 장관 명의의 예규통첩을 보면 이미 2월 6일에 좌의수형자의 동태조사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으므로 그 후에 동태변동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동태난에는 전향, 미전향 전향불능으로 기재하여 3개월마다 극비문서로 취급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0)</sup> 1956년 10월 29일 제정된 '가석방심사규정'에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수형자... 그 사상의 전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서류로 전향을 발표토록 하는 최초의 규정이고, 이를 근거로 1956년에 전향제도가 제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 정권 말기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좌의수에 대한 감시 탄압도 강화된다. 1958년 1월에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를 체포하여 59년 2월 16일 대법원의 사형 확정에 이어 7월 31일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한다. 1958년 12월 24일에는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한 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하였고, 그후 개정된 국보법의 인심혹란죄를 적용하여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1959년 12월 15일 '좌의수형자 사상동태 조사표 제출에 관한 건'이란 법무부 장관 명의의 예규를 통해 1960년 1월부터는 좌의수의 동태를 1개월마다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9)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박멸의 기억」을 벗어던지자, 『한겨레21』, 2001.10.10.

10) 이하 법무부 예규는 부록의 첨부자료 참고할 것.

1960년 4.19혁명 직전 대전형무소에는 비전향 좌의수가 약 270명 정도였으며, 4.19혁명 직후 비전향 좌의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전국 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좌의수에 대한 대폭적인 감형조치로 무기수는 20년으로 감형되고, 15년 이하의 유기형을 선고받은 전향자는 모두 석방되고, 비전향자는 잔형기가 1/3-2/3로 감형되었다. 간첩죄 무기수만은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1960년 6월 10일에는 불고지죄가 추가된 국가보안법 개정(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 2.3.2. 중앙정보부 시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등은 “은인 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5.16혁명공약을 발표한다. “군사 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겠다는 혁명공약은 곧바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좌의수들에게 실천되었다. 쿠데타 이후 1달도 채 되기 전인 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한 부서인 중앙정보부를 이어받는다는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보부가 공식적으로 창설되어(초대 부장 김종필) 좌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전향공작의 주요 정책결정권자가 된다. 61년 7월 3일에는 반공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7월 29일 제51회 각의에서 ‘좌의미전향수형자 집결 수용’을 의결하여 전국에 있던 비전향 좌의수 약 800명을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하였다. 이때 비전향장기수가 765명이었고, 여성 30명까지 합해 모두 800명에 이르렀다.<sup>11)</sup>

중앙정보부는 창설 이래, 좌의수에 대한 각종 지시를 ‘의뢰’의 형식으로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1961년 8월 10일 기·미결수를 막론하고 병사, 탈옥, 도주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무전 또는 전화로 중앙정보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1961년 8월 25일 ‘좌의수 조사(월례) 보고에 관한 건’이란 법무부장관 명의의 예규를 통해 사상전향자 및 미전향자를 구분하여 좌의수의 자세한 신상기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보부는 이후 3차례 더 좌의수 월례보고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 곧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보부는 감옥 내의 좌의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전향공작 정책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사상전향공작 심사과정이나 1973년의 사상공작 전담반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61년의 좌의수의 통계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1962년 1월 중앙정보부를 방문했을 때 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962년 4월 27일에 제정한 귀휴시행규칙 제6조에서 전향한 좌의수도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1963년 6월 25일 보낸 법무부장관의 ‘수형자 석방 통보’ 예규통첩에서는 좌의 수형자 및 요시찰인 석방 통보의 경우 4개월 전에 검찰총장, 내무부 치안국장, 귀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치안국장과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명함판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석방 통보서에는 전향 여부와 범죄개요, 재소중 행장, 범죄 개요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63년 4월 3일에는 지시한 좌의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는 5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단계별 심

사방안 및 심사조치를 담고 있다. 64년 1월 11일의 ‘좌의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에는 제4단계인 ‘전향심사’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시키도록 한 중앙특수수형자 교화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

‘좌의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에는 단계별 기간뿐만 아니라 단계별 조치에 각 과의 역할을 비롯하여 사상전향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담고 있다.

#### ‘좌의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sup>12)</sup>

##### 1. 단계별 심사기간

- 1단계 반성촉구(10일 내지 15일간)
- 2단계 전향공작(3개월 내지 4개월간)
-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1개월간)
- 4단계 전향심사(10일 내지 20일간)
- 5단계 전향문 발표(10일 내지 20일간)

‘미전향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조치’ 1단계(반성촉구)의 내용으로는 입소일부터 독거 수용하고 기본심사를 하는데 우선 교무과에서 범죄의 내용이나 전향 의사 등을 담은 사상동향서를 작성하고 보안과에서 제반 동정 기록을 작성하며, 소장이 면접하고, 교무과와 보안과가 같이 모여 종합분석을 한 후 공작 방안을 수립한다는 지시를 담고 있다.

2단계 전향공작에는 월 2회 이상 전방하고, 혼거와 독거를 병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읽거나 사회저명인사, 교무과장, 보안과장, 소장 등이 세뇌교육을 하고,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에는 혼거중의 다른 재소자로부터 동정을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동정기록을 작성하여 세뇌 결과를 취합한다.

4단계 전향희망자의 심사에는 교도관회의에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중앙정보부의 관계관도 참여시킨다. 전향 의사가 있는 좌의수는 전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향서에는 전향동기와 앞으로의 각오 등을 담은 전향서 작성 요령도 제시하고 있다. 국가관, 사상포기의 척도, 위장의 여부 등의 심사기준과 심사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5단계 전향문 발표는 총집교회시나 또는 소내 방송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에는 미전향자는 특수교도소로 이송하고, 전향자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소자와 동일하게 치우하도록 하며, 기전향자는 재심하지 않지만 전향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한다는 ‘분류 및 치우’ 항목도 있다.

1966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은 ‘좌의수형자 카드 작성’에 관한 예규를 일선 교도소에 보내고 있다. 좌의수형자에 대한 요시찰인 카드는 중앙정부부장의 의뢰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66년 12월 31일 현재 수용중인 전원과 이후 형이 확정되는 수형자는 수시로 작성하여 중앙정보부장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카드 기재시에 전향, 미전향 별로 카드 상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할 것을 별도의 주의사항으로 하였다. 카드를 작성한 자에 대한 주요 치우 변동(석방, 귀휴, 이송 등)이 있을 때에는 매월 말 사후에 일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청와대습격사건과 23일 미정보함 프에블로호사건이 터지면서 남북이 긴장상태로 변하게 되면서 좌의수들에 대한 정책 또한 급변하게 된다.

68년 4월 3일 중앙정보부장의 의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좌의수의 이송, 사면, 감형, 가석방, 형집행정

11) 서준식,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

12) 부록 첨부자료 7 ‘교정예규집’ 참조.

지, 귀휴 등의 사유발생 즉시 해당지구 대공분실에 보고토록 지시하고 있다. 대공분실에 보고토록 한 내용에는 정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시는 중앙정보부가 지니고 있는 업무조정권 때문이었다(제목이 '좌의수 업무 조정').

1968년 4월 17일 각의에서는 '1961년 7월 29일에 의결된 좌의미전향수형자 집결수용에 관한 건'을 해제하고 수형자를 형확정시 수용된 교도소에 분산 수용키로 의결한다. 각의에 이러한 의결을 제안하는 이유로 각 교도소별로 분산 수용하므로써 적의 집중 공격목표로부터 이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4월 27일 법무부장관은 사상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형확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에 분산 수용토록 지시하였다.

7월 26일에는 '좌의수형자 석방 통보'을 행방불명 방지와 소재파악을 위해 석방 4개월 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8월 2일에도 중앙정보부장의 의뢰에 따라 4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석방통보 사본을 첨부시키고 있다.

1969년 5월 13일에는 '교정누진처우규정'(이후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변경)<sup>13)</sup>을 제정하였고, '확신범으로써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즉 비전향자는 분류처우규정에서 제외하였다. 수형자분류급별 기준표에 의하면 'C급 다(번의한 죄의 확신범)'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전향자이며, 'D급(급외)'은 비전향자로 신입심사에서 급외자로 판정되면 재분류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비전향 좌의수들은 가석방의 대상자도 될 수 없었고, 작업 등을 나갈 수도 없었다.

5월 21일에 보낸 법무부장관 명의의 '미전향좌의수형자 수용'에 관한 예규를 통해 분산 수용된 미전향 좌의수를 대전, 대구, 광주, 전주 4곳에 6월 10일까지 이송토록 지시하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영등포, 인천, 목포, 군산, 의정부, 소록지소 등지는 취약지로서 적의 계렬라 기습 등 불의의 사태하에서 수용된 좌의수의 탈취 석방 등 불상 사태가 예상된다는 중앙정보부 및 내무부로부터의 통보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서울, 청주, 공주, 등의 교도소에 수용중인 비전향좌의수는 대전교도소로 이송하는 등 각 교도소 별로 이송할 교도소를 지정하고 있다.<sup>14)</sup> (1985년 안동교도소 신축 후에는 안동교도소에도 분산 수감된다).

1969년 10월 21일 3선개헌안이 통과된 이후, 11월 25일에 '좌의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시달'하고, 12월 1일에는 '미전향 좌의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라는 예규통첩을 시달하고 있다.

'미전향 좌의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sup>15)</sup>에는 "좌의수형자 교화방안을 시달하니 본 방안에 의거 과감하고 효과적인 전향공작을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정보부와 반공연맹 등의 협조를 얻어 멸공강연, 좌담회 등을 열고, 가족 친족 및 연고자에 의해 전향을 권유토록 하며, 전향자에 대하여는 즉시 작업을 부과하여 희망을 주고 처우를 개선하고, 우량한 자는 가석방 귀휴 등 은전의 혜택을 받게 하여 다른 미전향자 전향공작에 도움이 되게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70년 1월 16일에는 '최근 북괴는 무력침공을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의 계렬라 기습 등 불의의 사태하에서 있어서 좌의수형자의 탈취, 석방 등'이 예상되므로 전향, 미전향을 불문하고 4곳의 교도소로 1월 31일까지 전원 이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971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과 아울러 박정희가 유신의 길로 들어서는 준비를 하는 해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감옥내 좌의수에 대한 정책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갔다. 7월 1일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회담을 제의하고 8월 20일 판문점에서

13) 전문 내용 부록 참조.

14) 별첨 부록 참조.

15) 전문 부록 첨부자료 참조.

남북 적십자사 실무자들이 서로 신임장을 교환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남북의 해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10월 15일 학생들의 데모에 대해 대통령 특별명령, 서울지역 위수령, 대학휴업령이 잇따라 내리고 고대에 장갑차를 진입시키는 등 각 대학에 군인들이 주둔하게 된다. 3선개헌 반대에 이어 교련 거부, 특권층의 부정부패 척결, 정보정치의 폐지 등을 내건 학원시위사태로 전국 23개 대학의 주동학생 1백63명이 제적되었다. 19일에는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단 등 각계 인사 63명이 긴급 선언을 발표하여 위수령과 각 대학의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서울에 위수령이 발동되고 대학에 휴업령이 내린 지 불과 20여일 만인 12월 6일에는 국가비상상태를 선언하였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국가안보회의 합동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최근 중공의 UN 가입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남침 준비 등 제(諸) 양상을 예의 주시 검토하고 안보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했다고 판단, 국가비상상태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시책을 안보에 최우선을 둘 것이며 국민의 일부 자유도 유보할 결의를 천명했다. 한편 공화당은 21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가비상상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강구했으나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치자 27일 새벽 3시 국회 제3별관의 외무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전격 통과시켰다. 국민의 총동원령과 비상사태하의 물가 임금의 통제 및 집회 언론 출판의 규제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이 법안은 또한 특정지역 내의 입주 및 이동을 제한하고 재정 및 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조치 등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정세가 급변하게 되면 좌의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1972년 1월 12일 '전향 좌의수형자 동태사찰방법'을<sup>16)</sup> 시달하자마자 끝이어 21일에는 '좌의수의 죄질별 분류'에 관한 예규를 보내고 있다. 법무부는 좌의수를 전향과 미전향으로 우선 분류하고,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다시 A B C급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A급은 사상적 기초가 확고한 확신범으로 간첩 또는 살해행위에 가담하거나 선도적 임무에 당한 간부 또는 지도급 인물

B급은 사상적 바탕이 경미한 범죄자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자,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잠입하여 하였거나 하였던 자

C급은 용공분자(단순부역자)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 남북어부로 반공법에 저촉된 자,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

이러한 죄질별 분류기준에 의해 거실수용은 물론 제반 교정처우도 적정하게 해야 하며, 전향좌의수라도 평소 동정을 엄밀히 시찰하고, 동일 거실에 A B C급을 혼거수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타수의 모범이 되어 완전 전향한 자라고 인정될 때는 심리전의 성과를 이루도록 가석방을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1972년 5월 이후락과 박성철은 남북을 각기 방문하고,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때 감옥에 있던 많은 좌의수들은 곧 석방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7)</sup> 모든 사채를 동결하는 등의 8개 항이 담긴 대통령 긴급명령권(소위 '8·3조치')이 전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간 속에서 8월에는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열린다.

16)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내용은 확인하기 곤란하다. 77년 1월 15일자 '전향 좌의수형자 추수선도 강화' 예규에 자료근거는 표시되어 있다.

17)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상공작과 양심의 자유'(2001년 8월 10일 방송), "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 그 때는 이번 6·15 남북정상회담보다도 감격적이었어요. 특히, 좌의사건 내지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의 가족,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이제 모두 다 교환되든지, 석방돼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이일재씨)

이러한 남북의 화해 분위기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충격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그 정점에 10월유신이 자리잡는다. 박정희는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일부 현번조항의 효력 정지, 국회 해산 및 모든 정당활동의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 개최되었고, 11월 21일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2월 13일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며, 23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는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27일에 취임하였다.

### 2.3.3. 전향공작전담반 시대

유신의 첫해인 1973년은 감옥의 비전향 좌익수에게는 최악의 조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3년 3월에 '전향공작 전담교회사'를 공개 채용하였다.(73년의 전향공작에 대해서는 다음 장 참조). 초급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교회관(?)과 교회사(?)로 나뉘었으며, 비전향자의 전향을 강요하고 전향자와 비전향자를 관리하며 이들의 동태를 보고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1973년 8월 2일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 담반운영지침'의 법무부예규가 시달된다. 이에 따라 교회사들에 의한 전향공작이 본격화되었으며, 4.19 이후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조치를 받고 만기출소를 앞둔 자(주로 빨치산 출신)와 비전향수가 수감되어 있던 특별사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좌익수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살인적 고문이 주요 전향공작의 방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전향좌익수들이 전향하게 된다. 전향공작 전에 약 500명에 달하던 비전향좌익수들이 2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을 보면<sup>18)</sup> 72년 1월 21일의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에 의한 담당 책임제를 두고 전향공작을 독려했음이 드러난다. 전담반 요원은 심리전 교육을 이수한 교회직으로 하고, 전담반의 지휘통솔을 위해 반장과 담당관을 두었다. 반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3급율류(현 5급 상당) 교회직 공무원이었다. 전담반은 반장 주재하에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는 개별 공작성과 분석 및 중요사항 보고, 좌익수형자 동향파악 및 문제점 도출, 효율적인 공작방안 모색과 계획 수립을 토의하였다. 좌익수형자의 개성 파악과 적정한 개별공작 실시 및 공작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였다.

미전향자 중 A급에 속하는 자 : 반장 또는 담당관

미전향자 중 B급에 속하는 자 : 담당관 또는 4갑직

미전향자 중 C급에 속하는 자 : 4갑 또는 4을직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하였거나 사고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불온 사상을 유포 선동하거나 비밀연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했으며, 제반 공작진행 사항은 기록을 하여 비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감옥에서의 사상전향 공작의 강화되는 시점인 8월 8일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졌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은 8월 28일 그동안 이어져 오던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살인적인 고문을 동반한 전향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향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무부는 11월 8일 '전향 좌익수형자 추수선도 강화'라는 예규를 시달하게 된다. 불온동향을 사전에 탐지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이며, 개인교회의 정기시행 및 열독도서의 대여, 멸공교육의 실시 등과 전향 좌익수형자의 처우개선에 항상 유의하여 가석방, 귀휴허가 등 실적을 소내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대학가의 소요는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빈번해지면서 11월 말을 전후해 전국 대부분

18) 전문 부록 참조.

의 대학은 조기방학에 들어간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 등을 주장하였으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제한이 엄했던 탓에 시위기사는 거의 모두 1단 기사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12월 7일 정부는 구속학생의 전원 석방, 학사징계의 백지화 조치 등을 발표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한달 뒤에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면서 더욱 혹심한 탄압이 전개되는 이른바 긴급조치시대가 열리게 된다. 4월 3일 민청학련 명의로 주요 대학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시민폭동을 유발, 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 번란을 기도했다"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긴급조치에 의해 윤보선 전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지하 시인, 하재완 등을 비롯한 인혁당 재건 관련자 21명을 포함, 무려 2백53명이 비상군법회의에 송치됐으며 이철, 김지하 등 14명은 사형, 정문화 등 16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최고 20년에서 최하 5년의 징역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됐다.<sup>19)</sup>

법무부는 1973년 3월 29일에 이어 1975년 4월 10일에 '좌익수 전향공작 업무에 관한 유의사항'이란 예규를 시달하여, 교도소내 직원들이 전향공작에 방해되는 연행을 삼가고, 전향공작 전담요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충하여 전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예규는 1977년 1월 29일에도 시달하고 있다.

1975년 사회안전법의 제정으로 사상전향공작은 한 단계 진일보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전향을 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정희 죽음 이후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익수들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기도 했으나 5.17 이후 또다른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 12월 31일 반공법이 폐지되어 국가보안법에 흡수되었다. 88년 5월 25일 비전향으로 서준식씨가 최초로 출소하고, 이어 1989년 5월 29일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면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대거 출소하였다.

1992년 2월 15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비전향장기수들이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sup>20)</sup>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단과 냉전의 산물인 사상전향제도의 철폐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되찾고자 한다"며 사상전향을 사실상 강요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며 심지어는 사상전향제도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았고, 98년 8월 1일 법무부장관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으로 천명하여 기나긴 사상전향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준법서약서를 도입하여 또다른 전향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999년에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며 끝까지 감옥에 남아 있던 비전향 좌익수 17명이 사면으로 전원 석방되어 준법서약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2000년에는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 2.3.4. 사회안전법

1973년부터의 사상전향 전담반의 온갖 고문을 동원한 전향공작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좌익수들이 만기 출소하게 되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75년 사회안전법을 제정한다.<sup>21)</sup> 이 법은 고문

19)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독재정권의 야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받은 8명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어 4월 9일 새벽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의는 이 사건 최종판결에 대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했으며, 앤네스티는 '야만적 살인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5년 4월 문화방송이 판사 315명에게 보낸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하였다.

20) 1995년, 5. 25일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부록의 첨부자료 참조.

21) 사회안전법은 75년 7월 16일에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등 4대 전시입법의 날치기통과로 제정되었다.

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했던 좌익수뿐만 아니라 이미 만기출소한 많은 비전향자들에 대해서 일제 말기와 똑같은 제도로 예방구금하거나 감시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9년 보안감호처분이 삭제되는 보안관찰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사회안전법으로 14년 동안 128명이 재판도 없이 구금되고, 16명이 옥사하였으며, 51명이 비전향 상태에서 출소했다.

사회안전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일제의 사상범 탄압수단이었던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이어받은 사상통제의 제도적 장치로서 반공정신 강화를 통한 유신정권의 유지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사회안전법은 형법상의 내란죄, 와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죄, 반공법,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범한 자들로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을 목적으로 검사의 청구와 보안처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감호처분은 2년마다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었으며,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청주보안감호소를 설치하여 사회안전법이 폐지되는 89년까지 운영하였다. 서준식씨의 경우는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후 11년 동안 청주보안감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비전향자로서는 최초로 88년에 출소하게 된다. 이후 이 법이 폐지되면서 52명이 비전향 상태로 출소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복역기간은 29년이었다.

사회안전법은 사상범을 비전향 상태로는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는 반공국가의 극악한 보복적인 장치였다. 그리하여 대상자 대부분이 만기출소한 후 1년에서 10년간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구금된 사람들이었다. 보안감호소에서의 전향공작도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전향공작을 거부하며 단속을 하던 좌익수들에게 강제급식을 강행하다 2명이 죽기도 했다. 150명의 구금자 중에서 10%가 넘는 16명이 옥사를 할 정도로 치료 등 기본적인 처우도 제공되지 않았다. 심지어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석방을 조건으로 전향을 강요하였다.

사회안전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sup>22)</sup> 우선 사회안전법은 '재범의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보안처분을 부과하면서도 '위험성'이나 '현저성'을 판단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전향서의 제출 여부에 의하여 위험을 판단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sup>23)</sup>와 서울고등법원<sup>24)</sup> 및 대법원<sup>25)</sup>이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닌 행정작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안감호는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판단을 거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또한 사회안전법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재범의 위험성' '현저성'), 일사부재리 및 형별불소금의 원칙 위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원칙 위반(보안처분갱신에 대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등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 3. 사상전향공작전담반

#### 3.1. 배경

1973년 당시 전국에는 500여명의 비전향 좌익수가 수감되어 있었다.

정부는 체계적인 전향공작을 진행하기 위해 3월에 '전향공작전담 교회사'를 공개 채용한다. 법무부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교회관과 교회사가 선발하고, 이들을 좌익수가 있는 광주, 전주, 대전, 대구 교도소에 배치하였다. 교무과장을 반장으로 교무과 지도하에 전향공작 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대전교도소에 약 15명, 광주에 약 8명, 전주에 6명, 대구에 8-10명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물론 중앙정보부 기관원들이 각 교도소마다 파견되어 이들을 관리하였다. 일반 재소자 중에서 살인, 강도, 상해 범들이 전향공작에 동원되었다.<sup>26)</sup> 5.16 이후 좌익수들의 전향공작은 중앙정보부의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73년의 공작전담반도 중앙정보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73년 8월 2일의 법무부 예규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에는 중앙정보부에 관한 사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종 증언에 의하면 실질적인 지휘는 중앙정보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sup>27)</sup> 중정 직원들이 교도소마다 배치되어 전향심사를 맡아 결정권을 행사했다.

"만일 보안과에서 교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든지, 전향공작에 필요한 일을 거절을 했다든지, 또 전향공작 대상인 재소자를 보안과에서 잘못 다뤘다든지 할 적에는 그 때는 우리가 경치죠. 중앙정보부에서 실책이 안 있겠습니까? 보안과에서 이러니 우리 전향공작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일하기가. … 중앙정보부 대전분실에서 그 업무를 주관을 하고요. 중앙정보부에서 교무과에다가 전향공작반이라는 걸 두어서 공작반 중에서는 고도의 전향공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관들이 있었어요. …전향공작을 전담하면서 전향공작을 해 가지고 수고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부에서 어떤 대가가 있었을 거예요. 전향공작비라 해서."<sup>28)</sup>

1973년 전향공작이 갑자기 본격화된 이유로는 우선 4.19혁명 이후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좌익수들이 대량으로 만기출소하게 되자 이들을 전향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연이어 계속되는 남북한의 회담과정에서 남북간의 정치범 교환(또는 석방)에 대비하여 그 수를 줄일 필요에서 전향공작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9)</sup> 또한 남북의 이데올로기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향공작에도 견뎌낸 좌익수들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고, 월남패망 이후 유신정권의 총력안보 체제 구축이라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사회안전법을 만들어 비전향 좌익수들을 가두는 사회안전법을 4대 전시법이라 하여 날치기를 통해 제정하였다.

"일종의 이데올로기전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거야. 특히,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이쪽 사회를 보고 사상을 전향했다 하면 그러면 이쪽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우위에 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된 목적인 것 같고."<sup>30)</sup>

2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기복역 양심수 실태조사」, 1989, 49-55쪽 참조.

27) "대전교도소에 갔을 때 내 신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온 사람들 두 명은 스스로를 중정 직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중에 그대로 전향공작 전담반에 편성됐다."(서준식). 조성곤, 혼란에 빠진 군사정권의 카드 "대통령 특명, 죽여도 좋다", 『한겨레 21』 285호, 1999. 12. 2.

28) MBC <이제는 말한다>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 중, 전직 고위교정직 공무원.

29) 홍경령, 46쪽.

30) 이제는 말한다, 이일재씨 증언.

22) 홍경령, 49쪽.

23) 현재, 88헌가5.8, 89헌가44, 1989.7.14.

24) 82구411, 보호감호처분 갱신무효 확인.

25) 85누343, 보안감호 처분갱신 결정무효확인.

### 3.2. 1970년대 초 남북관계와 전향공작의 관련성

전향공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는 1972년 7.4공동성명서와 발표되고, 처음으로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대화를 전개했던 시기와 겹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남북대화와 전향공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까지 공개된 여러 자료와 정황을 볼 때 남북대화는 전향공작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한간에 체제우월성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배경으로 간접적으로 전향공작의 추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3.2.1. 남북한 체제 우월성 경쟁

남북대화는 남북한 사이에 체제 우월성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1970년대 남북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남북직접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으로 양국의 공식 대표단이 상대방의 수도를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잘살고, 발전했으며, 어느 쪽의 사람들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체제 우월성 경쟁이 불붙었다.

양쪽 모두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남쪽에 존재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존재는 충분히 당시 정권에게 문제 거리가 될만한 것이었다. 특히 1972년 '10월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구실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반공태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감옥에서 전향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좌익수들의 존재는 박정희 정권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체제우월성을 선전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좌익수들에 대한 전향 작업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대화로 심화된 체제우월성 경쟁은 1973년부터 전향공작이 엄청난 폭력을 수반하며 강화된 하나의 배경적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 3.2.2.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남한 정부당국은 이것이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촉발하게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5.16 쿠데타 세력들은 4.19 시기 전개된 다양한 민간 통일논의를 모두 용공적이고, 환상적인 통일논의로 규정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탄압하였다. 1960년대 군사정권기에는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주장하고, "남북교류"를 주장해도 정권의 탄압을 받는 상황이었다. 남북대화를 시작하면서도 정권과 보수 언론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이외의 다른 통일론들이 표출되는 것을 위험하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과정에서 남북대화에 다양한 견해를 갖는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4.19 때 표출된 남북협상론 등 민간 통일논의를 언급하며 이를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했다.<sup>31)</sup> 만약 4.19직후 장면 정권 때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은 좌의 장기수들이 출소하여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 또는 통일운동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박정희 정권은 이를 크게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초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과는 차원이 다른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은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민주화 운동세력들은 남북대화를 독재권력의 강화에 이용하

31) 1973년 6월 13일 남북조절위원회 3차회담 제2차회의에서 평양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4.19 때 민간 통일운동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민간 통일운동 세력의 구호를 예로 들면서 아직 통일의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남한 대표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7권 708쪽)

지 말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했을 때를 끌어이지 정부의 입장과 다른 통일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다. 장준하 등 일부 지식인들이 통일문제를 강조하고 나왔지만 이들의 목소리와 세력은 4.19시기 민간 통일논의와 운동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1960년대 군사정권의 등장 이후 반공이념 교육과 사상탄압이 극단적으로 강화되고, 1960년대 후반 빈번한 북한의 대남 무력공세로 반공이데올로기가 남한 사회에 전반적으로 내면화 된 상태에서 좌익수들이 출소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간차원의 통일논의와 운동을 촉발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의도가 전향공작과 직접 관련을 갖는다고 상정하기는 어렵다.

#### 3.2.3. 북한이 남북회담 과정에서 장기수 문제를 직접 언급했을 가능성?

만약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장기수 문제를 직접 언급하였다면 당연히 남한 정부는 장기수들에 대한 전향공작을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대화와 전향공작은 직접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접근 가능한 공식적인 남북대화 관련 자료를 볼 때 북한이 이 문제를 남한에 직접 제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도 북한이 남북대화와 관련하여 장기수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 회담과정에서 남한 대표들은 종종 '통혁당 목소리' 방송과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내정불간섭, 비방, 중상 금지 합의를 깨는 것으로 지적하고 항의했다.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한결 같이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남조선 혁명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언급 자체를 회피하였다. 북한은 남파 공작원 또는 간첩을 남한에 보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이들의 석방 및 송환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좌의 장기수의 다수를 이루었던 한국전쟁 때 검거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전쟁 때 검거된 좌의 장기수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보인 반응은 이 문제는 '포로 문제'이고 포로 문제는 남한과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미국과 담판할 문제라 했다.<sup>32)</sup> 즉 북한은 이들을 전쟁포로 차원에서 인식했고, 나아가 이들의 석방 및 송환 문제도 남한과 이야기할 것이 아닌 휴전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직접 협의할 문제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실제로 휴전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 전쟁 때 체포되어 감옥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 석방 또는 송환 요구를 남한에 한 적이 없다. 또한 빨치산 문제에 대해서도 휴전협상 때 일절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전쟁 때 남파되거나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잡힌 장기수 문제를 이 시점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직접 장기수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전향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가 이른바 "남북대화 중단 선언"을 하면서 "애국자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sup>33)</sup> 혹시 이 "애국자"라

32)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표명의 대표적인 것은 1999년 3월 김대중 정권의 출범 직후 나온 조선중앙통신사의 다음과 같은 논평을 들 수 있다.

"원래 포로문제는 조선정전협정에 따라 우리와 미국사이에 토의완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 북반부로 돌아오도록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남북회담 사무국 남북관련 사료 사이트)

33) 성명의 글자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만일 진실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응당 쌍방사이에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두 개의 조선' 노선을 취소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김대중을 비롯하여 체포, 투옥한 애국자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 노중선 역음, 1996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사계절 171쪽

는 것이 좌의 장기수를 지칭한 것이었고, 이러한 의도가 남한 당국에서 감지되었다면 이는 전향공작과 직접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된 “애국자”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던 민주화 운동 인사 또는 저항운동 세력을 가르키는 것이었지 감옥에 있는 장기수를 지칭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로동일보』의 사설에서 김영주 성명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에도 나타난다.

“적십자회담에 끼어들어 회담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성원들을 회담사업에서 제거하며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애국자들과 청년학생들을 석방해서 회담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사설: 남조선측은 우리의 제의를 자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로동신문』 1973. 11. 29)

위 인용문의 맥락과 김영주 성명서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등이 직접 언급된 맥락으로 볼 때 여기서 “애국자”란 유신체제에 맞서 싸우다가 투옥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기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애국자 석방”, “투옥인사 석방”이라는 말은 북한이 휴전 이후 남쪽의 정치상황을 비난할 때 종종 나타나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북한은 박정희 정권이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유신을 선포하고, 억압적인 통치를 한층 강화하였지만 1973년 초반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는 않았다.<sup>34)</sup> 그러나 1973년 중반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회담을 중단시킨 것인데 이러한 맥락을 볼 때에도 김영주 성명에서 언급된 “애국자 석방”이 장기수 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3.3. 전향공작전담반의 구체적 활동

#### 전담반 구조

교무과장(교회감, 부소장급) ----- 중앙정보부 각 분실

|  
공작반장(교회관)

|  
교회사(4급급)

|  
교회보(4급급)

|  
간수

이공순 - “밥을 적게 주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전향공작 때 비전향 장기수들한테는 감식 조치가 내려졌다. 그들이 먹었던 밥은 4등급이었다. 5등급은 환자나 병자한테 공급됐기 때문에 가장 질이 낮고, 적은 양의 주먹밥을 먹어야 했다. 이공순(66)씨는 “4번 입에 대면 끝이었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다”며

34) 1973년 3월 15일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담에서 평양측 대표 박성철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유신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귀족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피력하며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신 이후 “반공태세의 강화”가 강조되면서 남한이 군비증강에 나서고, 전보다 훨씬 군사화되는 길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피력했다.(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7권 608쪽)

“감옥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했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말한다.<한겨레21>

양희철 - “뒤에 수정을 세 개 차고 꽁꽁 묶어요. 묶고 매듭니다. 그리고 뱡 돌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너 전향하라 전향하면 다 풀어준다. 여기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이제는 말한다)

#### 3.3.1. 광주교도소<sup>35)</sup>

73년 10월에 테러가 시작되었으며, 이때 비전향 장기수 64명이었다. 74년 5월 39명으로 60%가 전향하게 된다.

· 1973년

교무과장 강철형

교회관 한윤덕, 문승호, 김무웅

교회사 박종호 정일봉 이규연 김영수 신학운 김봉윤 최한주

동원재소자 정무종(살인강도 10년 징역으로 1년 추가형) 원삼실(특수질도)

\* 정일봉 이규연 교회사가 가장 악랄하였으며, 정무종 원삼실을 이용하여 살인적인 폭력을 감행했다고 장기수 출신들이 증언하고 있다.

사망자

이영호(1973년), 박윤영(1974년), 이동근(1974년), 한명원(1974년), 변치수(??, 사망 당시 45세)

피해자

안학섭, 류낙진 - 물고문

이공순 - 이규연에게 뱃줄몽둥이

김동언 안식옥 - 반신불수

서준식 73년 12월 5일 자살미수

이인모, 이경찬, 신인영, 한장호, 임명호 이봉노

· 1975년

가해자 교무과 전담반 김홍렬 문성호(실적평가 광주 1위, 진급)

재소자 전호찬, 이건종. 항시 사동 청소부로 배치 수시 폭행

사망자

신춘복(정신이상, 자살 75. 11. 22.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검사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침대밑에 두고 숨겼으나 교도소 당국과 검사가 가져갔다고 한다)

최한석(1976. 5. 21. 사망. 고혈압, 의무과 치료를 교무과에서 통제)

김규호(1976. 6. 또는 7. 자살. 위장병, 차입된 약을 요구하다가 구타당하고 오는 도중 ‘이선생(이인모씨) 나, 더 이상 못삽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

장한영(1976년)

피해자 김명국 권오봉 권낙기 등

35) 각 교도소별 지휘체계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2회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자료집에서 인용하였다.

"1973년 11월 광주교도소에서 흉악범 2-3명씩이 들어 있는 감방에 좌의수 1인을 넣어 바늘로 찌르고 꼬집고 구타하면서 사상전향을 요구하고, 1인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 감방(0.75평)에 8-12명씩이나 수용하거나, 추운 겨울날 빙방으로 한 사람씩 데리고 가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끼얹으며 고문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두달간 한 일이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교도소의 비전향자 64명 중 39명이 전향하고 2명이 반신불수가 되었으며, 1975-1976년에는 2명이 사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했다."<sup>36)</sup>

서준식 - "그 두명이 일과가 끝나면서 무시무시한 공갈을 놓고 가는 거죠. 너 아까 전향한다고 그랬다. 내일 만약에 딴 소리하면 너 진짜로 죽여버리겠다. 물 먹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날 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유리조각 갖고 숨겨 놓은 걸로 손목을 끊었죠. 몸에 유리조각으로 유서를 새겼습니다. 2백자 정도. 몸에 새겼습니다. 종이도 없고 연필도 없고 그냥 죽기 억울하지 않습니까."(이제는 말한다)

"나는 결국 고춧가루고문, 물고문, 구둣발길질에 굴복한 것이다. 가석방되기 하루 전에 교무과장이 따로 불렀다. 그러고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다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나왔다." 김동수(62)씨는 전향공작이 가장 극심했던 74년 1월 광주교도소에서 전향했다. 전향서를 쓰고 며칠간 잠도 못 잤다고 했다. 그리고 88년 12월 광주교도소 문을 나섰다.<sup>37)</sup>

김영식 - "떡봉이들이 야구방망이만한 걸 어머니 사랑몽치라 그리고, 여기다가 떡봉이라고 탁 붙였어. 그리고는 와가지고서는 그냥 너 나와 해서는 엎어놓고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향을 안 해 이렇게 괴롭히면 전향을 할 줄 알았는데 전향을 안해. 아, 그담에는 물고문에 들어갔잖아."(이제는 말한다)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당사자들 가운데 장기수들의 기억에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광주교도소의 '정무종'과 '원삼실'이다. 이들은 전담반에 차출된 폭력전과 재소자들이었다. 장기수들에 따르면 전담반으로부터 전향강요 고문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들은 스스로 '떡봉'이라고 쓴 완장(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을 차고 다니며 비전향자들을 고문했다. 떡봉이라는 뜻은 말 안듣는 좌의수를 떡치듯 두들겨 팬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정씨와 원씨는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좌의수 특별사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 밑 창고에 끌고 가 물고문과 함께 채찍 몽둥이 등을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sup>38)</sup>

류락진 - 통학당재건위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류락진(71)씨는 정씨와 원씨에게 당했던 물고문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어느 날 정무종이 들어와 나를 끌고 창고방으로 향했다. 들어갔더니 칠성판이 놓여 있었다. 둘이 나를 번쩍 들더니 칠성판 위에 올려놓고 손에는 수갑 채우고, 다리와 허리를 포승줄로 묶었다. 그런 뒤 한명이 배 위에 올라타 광목천을 얼굴에 덮고는 큰 주전자 2개로 물을 들이부었다. 코와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고문을 그 뒤로도 3차례나 더 당했다."

안학섭 - "처음엔 물을 먹어서 머리가 빠그리지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저려와 그리고 그게 탁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엔 의식을 잃어. 의식을 잃으면 끌려놓고 배 누르고 그래서 물 토하면

36) 민가협,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조사, 49-55쪽. 서준식씨도 고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37) 황상철, 「74년 장기수들을 향한 살인적인 전향공작, 그뒤...」, 『한겨레 21』 285호, 1999.12.2.

38) 조성곤·황상철, 「고문의 주인공, 바로 너!」, 『한겨레21』, 1999.12.2.

찬물 끼얹어 또 갔다가 묶어 놓고 최고로 먹을 땐 한번 나가서 4개까지 먹어 봤어. 32리터? 그렇게 고문하고 그 때 그 물고문 처음 시작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하루 9명이 전향서를 쓰고 나갔습니다."(이제는 말한다)

안학섭 -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12월이면 몹시 추울 때, 방에 뒷문 창문 다 떼어놓고 시찰구 다 떼어놓고 방에 물 뿌리면 얼어. 거기다가 광목 이런 거 아래 위에 한 벌 쥐요. 한 벌 주고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얼음 위에서 자는 거지. 거기 집어놓고 내가 1주일만에 얼어버렸어."(이제는 말한다)

이공순 - 74년 이후 "재소자가 재소자를 구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전담반쪽은 떡봉이를 해체하고 직접 고문에 나섰다고 출소자들은 말한다. …전담반으로 직접 전향 고문을 담당한 사람으로 장기수들이 지목하는 사람은 "이규연" 교회사다. 67년 남파됐다 붙잡힌 이공순(66)씨는 … "이규연으로부터는 뱃줄몽둥이로 직접 두드려맞았다. 또 이규연은 감방에 직접 들어와 나를 끓어앉혀 놓고 구둣발로 허벅지를 짓이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뱃줄몽둥이란 10여미터 길이의 포승줄을 꼬아 만든 고문 도구. 이씨는 "뱃줄몽둥이를 물에 적셔 등을 때리면 자국은 남지 않아도 피멍이 들면서 속으로 골병이 든다"고 말했다.<한겨레 21>

당시 전담반원으로 직접 고문에 가담한 사람으로는 이규연씨말고도 "김무옹" "최한주" "한윤덕"씨 등이라고 장기수들은 밝히고 있다. 또 전담반을 책임지고 있던 당시 교무과장 강철형(68)씨에 대해서도 장기수들은 "직접 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해도 지휘계통상 고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며 "지시 또는 공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수들은 "강씨가 그 뒤 전주교도소로 전근해간 78년 10월께도 일주일동안 10여명의 비전향자 가운데 무려 8명을 강제전향시켰다"고 기억하고 있다.<sup>39)</sup>

광주에서 떡봉이와 전담반으로부터 이런 고문을 당한 사람은 이인모 이경찬 신인영 한장호 서준식씨 등이다. 또 자결 또는 고문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도 신춘복씨 등 여리 명이라고 장기수 출신 인사들은 증언한다.<한겨레21>

### 3.3.2. 대전교도소

73년 전향공작 당시 비전향 250명, 2년 후인 75년 전향자 259명, 비전향자 168명이 수감중이었다.<sup>40)</sup> 서준식은 75년에 100명 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전은 73년 말~74년 초와 86년 전후 두 번의 집중적인 전향고문이 진행되었다.

#### 1973년 전향공작

소장	이정세
부소장	배웅찬
교무과장	김치연 ----- 대전중앙정보부 1반장 박석준
보안과장	박민희

39) 당시 교무과장 강철형(68)씨는 "떡봉이는 모르고, 고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씨는 "교화는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산주의 확신자들을 설득해 자유 대한의 품에 귀의시켜 다 같이 잘살아보자는 홀륭한 생각에서였다. 당시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한겨레21.

40) 한옥신, 『사상범죄론』, 최신출판사, 1975년, 208-234쪽(홍경령 재인용).

의무과장 대리 백기휴, 직원 홍성태	
교도관 김진태	
전담반 나석규(대전, 대구, 전주, 청주 등 1,050명의 죄의수를 전향시킨 공로로 84년 범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 수상), 송대용(부산대 범대 출신) <sup>41)</sup> , 이종송, 김성현, 유종홍, 신학운, 박왕종(사망)	
재소자 이돈웅(일명 이정웅, 88년 현재 공주교도소 복역중) 조병길(일명 석환), 고영재, 김기웅(일명 목포내기), 갈가리(본명? 청송감호소)	
* 이들의 지도는 전담 교회사가 했으며, 청소부로 배치를 하여 비전향 정치범을 구타, 고문하도록 했음	
사망자 최석기(1974. 4. 4. 조석환 등 재소자 3명 폭행 타살. 목격자 의무과 간병 출력자.) <sup>42)</sup> -- 대전지검 검사 현경대 변사사건 조사	
박용서("74년(*7월 20일) 이돈웅이 구타하고 바늘이 수백개나 달린 침석으로 마구 찔러 결국 숨졌다"--<한겨레21>) -- 검사 이희권, 당시 의무과 촉탁의사 윤윤호	
고문피해자 김선명, 이대식, 기세문(진정인), 박순철(조병길 폭행으로 전향) 등	
1986년	
소장 배옹찬	
교무과장 김치연	
보안과 8급 교사 이동균	
*1986년에는 보안과 위주로 전향공작이 진행되었다.	

안영기 : 조석환 등 재소자 3명이 폭행. 강당에서 전향의사 강제 발표.

박용서 : 74년 이돈웅이 구타하고 바늘이 수백개나 달린 침석으로 마구 찔러 숨졌다.

최석기 사망 1974. 4. 4. 조석환 등 재소자 3명 폭행 타살. 목격자 의무과 간병 출력자.

강제 전향자 김세문 박문철 정영만 남일만

안학섭 위장병 악화로 치료 요구했으나 전향해야 치료해준다고

자살자 이용훈 황필구

박종호 동상으로 한 발 절단

정벌방 수용자 이공순 홍경선 김원철 탁해섭

(1973년-1976년, 사망 4명)

김태원 1974년

배학수 1974년

최석기 1974년 4월

박용서 1974년 6월

안영기 - 73년 9월 어느 날 교무과의 호출을 받고 죄의수 사동의 청소부를 따라 나가다가 또다른 재소자 2명에게 이끌려 임시병사로 쓰이던 건물에서 12시부터 장장 8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당시 재소자들은 운동팬티에 축구화를 신고 온몸을 마구 차고 두드려졌다. "너,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41) 이대식 진술

42) 김인수씨는 "당시 최석기씨가 구타로 사망하자 이돈웅은 정벌방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때 이돈웅은 '전담반에서 나에게 지시해 놓고 이런 수는 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한겨레21>

장군 죽이려고 내려왔지"라는 얼토당토않은 질문도 쏟아졌다. 저녁이 돼서도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맞다가는 개죽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안씨는 그날 밤 조병길 등 강파 재소자 2명과 함께 고문방에서 지샌 다음날 강당에서 전향 발표를 했다. 폭행으로 하체를 전혀 쓰지 못했던 안씨는 다른 사람의 등에 업힌 채 치미는 울분을 참으면서 전향을 인정해야 했다. 그 뒤 안씨는 한달 반 동안 혼자 힘으로 대소변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씨는 자신을 때린 재소자 한명의 팬티에서 수형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그가 조씨임을 알아냈다.<sup>43)<한겨레21></sup>

최선목 - 고문방에서 폭행당했던 최선목씨는 "이돈웅은 청소부로 죄의수사동에 배치됐는데 전담반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전담반에서 가출옥을 내준다 어쩐다하면서 이용했다. 새벽녘에 데려가 전향하겠다고 할 때까지 고문했다"고 말했다.<한겨레21>

김동기 - 86년 당시 선두에 서서 고문을 직접 자행한 사람은 보안과 8급 교사이던 '이동균'씨가 지목됐다. 장기수 김동기씨는 "전국의 비전향수가 대전으로 집결되던 84년은 전향공작이 한풀 꺾인 때라 처우가 그런대로 훤했었다. 그러나 85년 중반에 배웅찬 교도소장이 부임하면서 처우가 급격히 나빠져 비전향자들이 단식에 들어가자 교도소쪽은 보안과를 동원해 '강제급식'을 한다면서 소금물 고문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이동균은 강제로 비전향자의 입 속에 호스를 박고 소금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자행했다. 나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5차례나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어 "이동균은 정복을 입고 경교대를 동원해 강제급식한 것으로 미뤄 교도소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배옹찬(74) 당시 교도소장의 책임을 지적했다.<sup>44)</sup>

### 3.3.3. 전주교도소

73년 비전향자 14명, 75년경에는 10명 정도.

78년 10월경 강철형 교무과장 부임 이후 전향공작 본격화되었다.

마영주와 육성욱이 통방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라며 고문하였다.

탁해섭(당시 52세)는 78년 10월 13-20일 사이에 고문 때문에 기절한 상태에서 전향서에 지문을 날인 함. 이후 전향서 취소 단식투쟁을 벌이다 2, 3인에게 고문당한 후 자살하였다고 한다.

(1973-1978, 사망 2명)

김태선 1973년 10월

탁해섭 1978년 10월

### 3.3.4. 대구 교도소

73년에 비전향 70여명, 75년에 30여명.

43) 당시 조씨의 고문을 사주한 사람으로 전담반 직원 나석규(62)씨를 지목했다. "...내가 고문당하기 전날 당시 전담반이었던 나석규가 찾아와 전향을 강요하다가 "두고보자"며 이를 잘고 갔다...당시에 전담반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한겨레21>

44) 86년 당시 대전교도소 소장이었던 배옹찬씨도 "내가 직접 손을 댄 일도 없고, 고문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한겨레21>

73년 여름

변영균(교무과장)을 비롯 8명의 전향공작 전담반 구성.

이중 장원범(중정출신 교회관)은 깡패를 거느림.

피해자 박판수 김용운

5-6일간 바늘로 온몸을 찌름. 7명 자살

(1973-1976)

기세일 1975. 4. 26

김영호 1973

윤종하 1974

정영훈 1976. 6

손윤규 1976

### 3.3.5. 청주보안감호소

1978. 11. 22. 개칭, 피보안감호자 110명(대전에서 이감)

80년 7월 11일 변형만 김용성 사망<sup>45)</sup>

- 7월 8일 소지할 수 있는 책 권수 문제로 충돌
- 서준식(당시 36세) 저녁식사 거부, 감호관 직원이 10여 명의 교도관을 데려와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사람 죽는다”고 소리치고, 이때 각방에서 감방문을 차기 시작
- 이윤범 주임, 황용갑(당시 56세)를 끌고 감
- 감호과까지 자진해서 간 서준식씨 수정과 포승으로 결박되어 있는 황용갑씨 목격
- 결박을 풀 것을 요구하자 오기수 감호과장가 서준식씨를 최조실로 끌고감.
- 오기수 등이 황용갑 구타, 이후 재소자들이 방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자 결박한 채로 돌려보냄.
- 9일 저녁 65명이 단식 돌입
- 10일, 감호과 사무실로 여러 명을 끌어내어 강제 급식. 당시 입회자 : 오기수(감호과장), 김영숙(서무과장), 오성호(의무과장), 전영선(의무과 부장)
- 강제급식 방법 : 의자에 손을 제껴 묶고 시키면 소금물을 상당히 굽은 호스로 식도(또는 거도)까지 쑤셔넣어 빈사상태까지 몰고가는 방식이었다.
- 강제급식자 : 김용규, 최점수, 문갑수, 박순철, 변형만, 김용성 등 13-14명 가량
- 11일 감호소 측에서는 강제급식자들을 지하실에 집결시켜 구타와 고문 자행, 변형만씨 사망.<sup>46)</sup>
- 11일 김용성시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sup>47)</sup> 이후 강제급식 중단

45) '80년 7월 11일 청주보안감호소 살인 고문 진상보고서' 유인물 참조.

46) 당시 47세. 목격자 : 이인모, 김병인 등 당시 지하실에 끌려갔던 13-14명. 강제급식을 받고 지하실에 끌려온 변형만씨는 성명 미상의 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다음 비명과 함께 피를 토하였다. 이후 사망했으나 감호소측은 심장마비로 사인을 변명했다.

47) 당시 66세. 목격자 : 최남규, 김중종, 금재성. 뒤로 수갑을 찬 채 4-5명의 직원이 강제급식을 실시. 호흡이 곤란하여 혁혁 괴성과 비명을 지르며 무릎이 꿀린 상태에서 뒤로 쓰러지자 빅 쓰러지는 소리에 의무과장과 김중종씨가 내다 보았음. 의무과장이 “수정 풀어” 소리를 지르고 인공호흡을 실시, 이 대 최남규씨가 감호과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목격, “입에 거품을 물고 동공이 확산. 누구를 응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순간 정신이 아찔했다”고 증언. 김용성씨는 당시 고령에 심장병, 고혈압환자

- 이후 의무과장이 파면처분되었으나 2개월 후 새로 채용되어 감호소에서 근무하였다.
- 강제급식 전후 과정을 감호소측은 보안사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한다.
- 사건 직후 보안사에서 의무장교(소위??)가 나와 사건경위를 조사해 갔다.

### 보안감호소의 사망자 - 16명

공재용 76년(위암)

김용철 76년(고혈압)

하야청 76년(자살, 일본인)

백갑기 77년(후두암)

김경익 77년(위암)

안준호 77년(고혈압)

김홍직 77년(혈압 두 번 타점)

이훈동 78년(결석증, 위장병)

송순희 79년(가슴앓이)

변형만 80년 7월 11일(강제급식, 기도파열 출혈 사망, 교도소 공동묘지 매장)

김용성 80년 7월 11일(강제급식). 당시 66세. 목격자 최남규 김중종 금재성. 아들 김경재에게 연락

김규창 80년(대장암, 강제급식 후유증)

최점수 81년(간경화, 강제급식 후유증)

공인두 87년(뇌종양)

문갑수 87년

이상률 87년(간질, 뇌종양)

### - 이상률씨의 경우<sup>48)</sup>

“작년(1987년) 2월 17일 아침, 이상률씨는 호흡과 맥박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나가 석방되었다. 나는 그가 석방되면서 그날 죽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상률씨는 15년형을 받아 복역하고 1966-67년경 출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75년 사회안전법 공포와 동시에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구금생활을 했는데 1981년(1982?)부터 때때로 극심한 전간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호소 관리당국은 ‘폐병’으로 추정하고 방치했다가 얼마후에(의료예산관계상 뇌정밀검사는 엄두도 못내고) 정신과 의사로 하여금 진찰케 했으나 그 진찰의 결과에 대하여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2년 가량을 끌다가 1984년에 처음으로 뇌사진을 촬영한 결과 뇌에 충이 가득차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뇌낭충증이었다. 이 시점에서 이상률씨는 누가 보아도 ‘재범의 현저한’ 위험성 짜위가 가당치 않을 폐인이었다. ... 죽기 몇 달전부터 이상률씨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는데, 관리당국은 다른 피보호자의 간호지원을 끝까지 거부한 채, 거의 죽어나가던 2월 17일까지 이상률씨를 계속 독거수용했다... 곁에 있어서 병세를 늘 점검해 주거나 시중을 들어주거나 혹은 따뜻한 말이라도 걸어줄 사람도 없이,

였으며 강제급식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감호소측은 들어와서 받아먹으라고 하면서 상당히 굽은 호스로 강제급식을 강행하였다. 연락을 받고 온 아들 김경재씨에게 7월 12일 감호소측은 심상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소장과 의무과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만날 수 없다고 하였다. 감호소측은 사체를 일방적으로 부검한 상태에서 사체인수를 가족에게 종용하였고,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사체인수를 거부하는 가족에게 반강제로 지장을 받아냈다. 당시 사체는 청주도립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48) 서준식, 『한겨레』 1988년 6월 19일자.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싸비리는 대소변으로 말미암아 허벅지는 온통 짓무르고 피부가 벗겨져 진물이 베어나왔다.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비참속에서 이상률씨는 고통스러운 목숨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죽기 바로 직전(아니면 죽은 뒤에) 전라도에서 달려온 가장에게 인도되었다.”

피해자 박순철, 김현진, 문갑수, 김권식(80년 가을 감호과장 오기수로부터 구타, 박종호 교회사, 최종대교사)

1988. 1. 14, 17. 양일 서준식 강종건 한선화 최남규 김중종 김용규 면담 증언

1988. 11. 26. 노태우 대통령,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비민주적 조항만을 개정하겠다.”

1988. 12. 1. 37명 사회안전법 폐지, 전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

1989년 2월 2일 청주보안감호소 35인의 수감자 호소문 제출 - 1월 30일부터 35인 무기한 단식

#### 4.. 비전향자에 대한 불이익과 전향을 거부하는 이유

##### 4.1. 비전향자에 대한 불이익

1969년 5월 13일 제정된 교정누진처우규정<sup>49)</sup>이 제정되어, 모든 수형자를 A급(개선 가능), B급(개선 곤란), C급(개선 극히 곤란), D급(급외)로 분류하였다. 전향한 좌익화신범은 C급으로, 비전향은 D급으로 분류된다.<sup>50)</sup>

수형자 분류에 따라 누진처우가 시행되는데, D급으로 분류된 비전향 좌익수들은 누진처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월 1회의 접견과 서신왕래만이 인정될 뿐 기타 모든 권리는 박탈된다. 물론 이러한 권리마저도 소장의 재량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전향 좌익수들은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무기수라면 죽을 때까지, 유기수라면 형기만료일까지 감형되지 않고 계속 구금생활을 해야 했다. 특히 비전향 좌익수들은 일반소들과 완전히 분리된 사동, 이를하여 특별사동(특사)의 0.7평 내지 0.9평의 독방에 구금되어 생활해야 한다.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시간도 좌익수 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 한시간씩 빛쬐기인생’을 산다는 말도 있다.

청주보안감호소에 대해 앰네스티는 87년 1월 13일자 보고서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의 처우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다.<sup>51)</sup>

“수용자 대부분이 60-70세이고 상호 자유로운 접촉이 불가능한 독방에 구금되어 있다. 다른 교도소에 비해 음식의 질은 최하수준이다. 하루에 오직 한시간 운동이 허용된다.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검열을 받은 책만이 소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적계가족과는 한 달에 1번으로 면회가 제한되고 그나마 대화에도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

##### 4.2.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이유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세계관, 민족관, 역사관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기 위하여 전향을 거부하였다.

비전향 남파공작원들은 자신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거부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6.25전쟁 과정 또는 그 전후로 하여 수감된 빨치산이나 인민군 출신들은 일제하, 또는 해방후 이데올로기 대립이 치열하던 시기에 그들 나름대로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고뇌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따라서 전향을 죽음보다 더한 굴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교도소 내의 가혹한 처우와 고문에 굴복하여 전향을 하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버리는 것이므로 전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사상 전향은 때로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상’의 문제이기를 떠나,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폭력 앞에서 폭력에 대하여 무릎을 굽어야 하느냐라는

49) 전문 부록 ??쪽 참조.

50) 법무부 예규(72. 1. 21.)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에 따르면, 좌익수들은 전향, 비전향으로 우선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A(사상적 기초가 확고한 확신범), B(사상적 바탕이 경미한 범죄), C(용공분자)급으로 다시 나누고 있다.

51) 홍경령, 재인용.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다.”<sup>52)</sup>

그리고 인간을 공산주의자, 비공산주의자로 분류하는 사상전향제도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전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간첩으로 조작되어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전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전향은 곧 자신이 간첩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미유학생사건으로 수감된 김성만씨나 강용주씨, 일본관련 간첩사건으로 수감된 장의균씨, 남북어부들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 5. 사상전향제도의 법적 근거 및 그 비판

### 5.1. 법 규정

#### △가석방심사규정=>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 [제정 1956.10.29 법무부령 제19호 법무부] 제7조(심사상의 주의) “2항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969. 7. 24 전문개정, 법무부령 제142호 법무부] 제6조(심사상의 주의) <동일>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제정 1978.7.4 법무부령 제206호 법무부, 가석방심사규정 폐지]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규정과 동일>
  -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1998. 10. 10. 개정) 제14조(심사상의 주의) ②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군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 [제정 1962.12.22 국방부령 제68호 국방부] 제12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가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부된 수형자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자의 아첨 및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위반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귀속시행규칙

- [제정 1962.4.27 법무부령 제38호 법무부] 제6조 (심사상의 주의) ①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하는 때에는 특히 그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 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전향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교정누진처우규정=>수형자분류처우규칙

- (1969. 5. 13. 제정)(수형자상우규정과 행장심사규정 폐지) 제2조 (적용범위) ①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5.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수형자의 분류) A급(개선이 가능한 자) B급(개선이 곤란한 자) C급(개선이 극히 곤란한 자)  
[별표 1] 수형자분류급별 기준표
  - C급 다 (번의한 죄의 확신범) 죄의 사상범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전향의 뜻이 나타난 자
  - D급 (급외) 5.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신입심사에서 급외자로 판정되면 재분류

52) 서준식, 『나의 주장』, 도서출판 공동체. “저도 수없이 무엇보다도 가족과 같이 살고 싶었고, 밖에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전향을 하지 않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테러를 하고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갈라 놓고 전향공작 한답시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가는 힘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라 얼마나 비열한 짓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얼마나 이를 가느냐. 이것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분류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일부개정 1991.3.14 법무부령 제348호 법무부]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확신법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별표 1] 수형자 분류급별 기준표

C급 나 (번의한 확신법) 정치 종교 및 사상확신법으로서 이념에 대한 확신을 번의하거나 사상전향의 뜻이 나타난 자

D급 (금의) 5. 확신법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일부개정 1992.3.23 법무부령 제361호 법무부]

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징역수형자 및 신청에 의하여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별표 1] 수형자 분류급별 기준표

C급 나(개전의 정이 있는 자유민주질서파괴법) 개전의 정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 파괴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는 자

D급(금의)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수형자분류처우규칙[전문개정 1999.5.20 법무부령 제480호 법무부]에서 좌익수 조항은 삭제

#### △사회안전법

· [제정 1975. 7. 16.] 제7조(보안처분 면제요건) 1항 제1호 “반공정신이 확인되었을 것”

#### △사회안전법 시행령

· (제정 1975. 7. 16.) 10조(동태보고) 1항 보안감호소의 장은 매 3월마다 피보안감호자의 동태·건강 상태·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등) 1항 제1호 반공정신을 확립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 제15조(보안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회안전법 시행규칙

· (제정 1975. 7. 21.) 제19조(사안인지) ③제1항의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사안인지보고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전향여부

· 제21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2항 “교도소 등의 재소 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 별지 3호, 4호서식 보안처분대상자신고서 (교도소장 및 경찰서장에게 제출, 범죄사실과 전향 여부, 전향연월일, 전향교도소 등 기록)

· 제24호서식 용의자심문조사 (문항 “용의자는 교도소등에 재소 중 전향한 사실이 있는가요?”)

· 제59호서식 용의자환경조사서(전향여부)

#### △사회안전법에의한군관계보안처분에관한규칙

· [제정 1976.3.9 국방부령 제286호 국방부] 제19조(사안인지), 제21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2. 군교도소 또는 영창의 재소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 △보안관찰법>(1989. 6. 16., 사회안전법 전면 개정 명칭 변경)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한처분을 폐지하며, 종전의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처분을 보장하여 보안관찰처분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11조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①항 1.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

#### △보안관찰법 시행령

· 제8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사상전향 여부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제17조(사안인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 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보호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2.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었는지의 여부

#### 5.2. 법무부 예규

##### △1963. 4. 3. 법교관 838-80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1단계 반성촉구(10일 내지 15일간)

2단계 전향공작(3개월 내지 4개월간)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1개월간)

4단계 전향심사(10일 내지 20일간)

5단계 전향문 발표(10일 내지 20일간)

· 1964. 1. 11. 예규관 제5-384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

1. 법교관 838-80(63.4.3.)의 제4단계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 참여토록 중앙특수수형자 교화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1. 단계별 심사기간

2. 미전향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조치
3. 분류 및 치우
  - 가. 미전향자는 특수교도소에 이송
  - 나. 전향자의 치우는 원칙적으로 일반재소자와 동일 취급
  - 다. 기전향자는 재심치 않는다. 단 전향여부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재심사  
비고 1. 동향 및 동정기록부 전향서의 비치
    - 가.동향기록부 전향서 : 교무과장 책임하에 별도보관
    - 나. 동정기록부 : 보안과장 책임하에 별도보관
    - 다. 동향 동정 기록부는 출소 이송시에 신분장에 편철

△1969. 11. 25(관리838-12545)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시달'

1. 전향 여부의 판정을 위하여 전향심사를 할 때에는 교도관회의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이 참여토록 각 지구의 중앙정보부(지부, 분실)에 의뢰할 것.
2. 사상전향 심사는 5단계 심사방안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 확정당시 잔형기 6개월 미만의 단기 수형자는 본 방안에 의한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미전향 그대로 석방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이와 같은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본 방안에 구애(拘礙)됨이 없이 단기 특별심사할 것이며 다만 위장전향 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것.
3. 위 특별심사에도 교도관회의 및 관계직원의 출석과 의견진술, 중앙정보부 관계관의 참여 등 모든 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

(첨부한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예규관 제5-384호의 내용과 동일)

· 1969. 12. 1.(관리838-12867) '미전향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

1. 현하 국내외 정세를 감안, 미전향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에 ... 금후 보다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전향공작 요청되므로 좌익수형자교화방안을 시달하니 미전향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계획서를 분기별로 작성, 계획대로 시행, 동계획 및 시행결과를 서식에 의거 기밀 염수보고

2. 미전향자가 없는 교도소에도...대비 계획서를 작성 보고
3. 관리838-9699(69. 9. 4)는 이후 무효

#### 좌익수형자 교화 방안

##### 1. 멸공간행물 발간 및 활용

대전교도소 발간 '바른길'과 각소 소내신문에 멸공기사를 많이 게재, 열독시키고, 중앙정보부(지부, 분실) 반공연맹 종교계 학계 등 협조하여 반공간행물을 확보하고 열독을 권장하여 전향하도록 유도한다.

##### 2. 멸공강연 (내용 생략)

##### 3. 영화상영 (내용 생략)

##### 4. 사회참관

구금생활이 오래 계속되어 사회발전상에 어두운 그들에게 산업시설 도시발전상 명소 등의 참관으로 국가발전상을 인식케 하고 주민의 윤택한 생활면을 피부로 느끼도록 보여주어 전향심을 유발케 한다.

##### 5. 가족 친족 및 연고자에 의한 전향 권유 (내용 생략)

##### 6. 사회저명인사에 의한 전향 권유 (내용 생략)

##### 7. 가족통신 (내용 생략)

##### 8. 좌담회 (내용 생략)

##### 9. 교도소장, 교무과장 및 각 과장 간부의 전향 권유

교도소장, 교무과장, 보안과장 및 각 과장과 간부는 윤번으로 계획표에 의거 미전향자를 개별적으로 면접, 전향을 권유한다.

##### 10. 멸공도서 보급 (내용 생략)

##### 11. 방송에 의한 전향공작 (내용 생략)

##### 12. 카운슬링 및 개인교회

.... 개인의 문제점 애로점을 청취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해결하여 좀으로써 그들이 감복하여 전향토록 한다.

##### 13. 전향자에 대한 치우개선

전향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을 부과하여 희망을 주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치우를 개선하고 우량한 자는 가석방 귀휴 등 은전의 혜택을 받게 하여 다른 미전향자 전향공작에 도움이 되게 한다.

##### 14. 교화기구 활용 (내용 생략)

##### 15. 기타 본 방안외에도 각소 설정에 따라 좋은 방안을 연구 침가하여 적의 시행할 것.

· 1970. 1. 29. 교정180-967 '교정사고 방지책 시달'

근간 수형자 난동과 난동수형자의 총살 및 사살사고와 관련 시정대책

(3) (다) 미전향 좌익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 후 그의 일거 일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전향좌익수에 대하여는 형식상으로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치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으로는 요시찰에 붙여 위장전향 여부와 타재소자에 대한 사상전파 등 불순행동의 예방을 위한 동정사찰을 철저히 할 것.

· 1972. 1. 21. 교정832, 5-1435 '좌익수의 좌질별 분류'

##### 1. 가. 좌익수의 분류

(1) 좌익수는 전향좌익수와 미전향좌익수로 우선 분류,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한다.

##### (2) 분류기준

A급 사상적 기초가 확고한 확신범 1. 간첩 또는 살해행위에 가담한 자, 2. 선도적 임무에 당한 간부 또는 지도급 인물

B급 사상적 바탕이 경미한 범죄 1.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자, 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 또는 잠입하려 하였거나 하였던 자

C급 용공분자(단순부역자)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자, 2. 남북여부로 반공법에 저촉된 자, 3.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자.

##### 나. 분류수용 및 치우

(2) 미전향 좌익수 독거수용 원칙. C급은 시설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혼거수용

(3) 전향좌익수라도 동일 거실에 A, B, C급을 혼거수용 금지, 부득이한 경우 혼거수용.

(4) 완전전향한 자로 인정될 때 심리전의 성과를 거양토록 가석방을 활용

다. 좌익수의 각종 복역기록의 보전 : 신분장에 편철되는 제반 문서, 출소후에도 요시찰 문서가 됨으로 영구보존 문서.

·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 / 예규관 제180-161 (73. 8. 2)

1. (목적)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이하 요원이라 함)의 활동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작 업무를 수행케 함.

2. (적용범위) 전향공작 전담반의 운영 및 요원의 활동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 의한다.

### 3. (구성 및 배치)

(1) 요원은 심리전 교육을 이수한 교회직으로 하며 좌의수형자 집금 교도소에 배치한다.

(2) 요원은 좌의수형자 전향공작 업무를 전담한다.

(3) 전담반의 지휘통솔과 사무를 분담해 하기 위하여 반장을 두고 반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4) 반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3급을류 교회직 공무원을 소장이 지명한다.

(5) 반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관 및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4. (회의) 전담반은 다음에 관한 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반장주재하에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 개별 공작성과 분석 및 중요사항 보고

(2) 좌의수형자 동향 파악 및 문제점 도출

(3) 효율적인 공작방안 모색과 계획 수립

5. (담당책임제) 좌의수형자 개개인의 개성 파악과 적정한 개별공작 실시 및 공작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 단 공작수행상 필요하거나 요원별 분담인원의 균형적 담당을 시키기 위하여 급별 담당인원의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분담구분에 구애없이 담당을 적의 조절할 수 있다.

(1) 미전향자 중 A급에 속하는 자 : 반장 또는 담당관

(2) 미전향자 중 B급에 속하는 자 : 담당관 또는 4갑직

(3) 미전향자 중 C급에 속하는 자 : 4갑 또는 4을직

6. (담당의 교체) 능률적인 공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을 교체할 수 있다.

### 7. (담당의 참석) 내용 생략

### 8. (이송시 담당요원의 동행) 생략

9. (보고 및 기록) 요원은 담당한 공작을 종료하거나 공작수행중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반 공작진행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하였거나 사고가 있을 때

(2) 수형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3) 수형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4) 수형자가 불온사상을 유포 선동하거나 비밀연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5.3.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적 비판

### 5.3.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파괴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sup>53)</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되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반전체 주의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영역에서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 법의보다도 우선하는 인간 우선의 원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53) 유신헌법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격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화하거나 수단화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인간이 인간임을 부정하는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인간실험이나 물적 가치를 인적 가치보다 높이 평가하는 행위 등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사상전향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sup>54)</sup>

첫째, 사상전향제도는 인간이 인간임을 침해하는, 비인간화의 체계이다. 인간은 매우 다양한 성격과 동기를 지니게 되므로, 그의 세계관, 인간관 등을 자유주의나 공산주의의 흑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임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둘째, 사상전향제도는 인간의 주체성을 파괴하는 제도이다. 사상전향의 강요는 시행과정에서 폭력, 고문을 동원하여 인간을 무력화시키게 되어 인간의 자기결정의 자유, 즉 인간의 주체성을 파괴하게 된다.

셋째, 사상전향제도는 이간의 체계이다. 국가권력은 반체제인사들을 전향자와 비전향자로 분리하여 그들을 상호대립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조직적인 저항세력으로 단결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는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결정의 자유에 의해 공동체의 질서형성에 참여하는 인격주체적 인간상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상전향제도는 ‘형별의 윤리성’의 요구에 비추어도 허용할 수 없다. 형별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효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형별의 윤리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제2차 대전 당시 파시즘에 의한 대량학살, 고문, 테러 등의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짚은 반성에서 요구된 것으로, 형별 자체 및 그 집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서독기본법 제1조, 일본헌법 제13조 등 각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 헌장 전문이나 세계인권선언 제1조, 유럽인권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8조에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금지의 원칙은 형별의 윤리성 잘 반영하고 있다.

### 2) 양심의 자유 침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를 구성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자유, 주의, 세계관, 도덕적 윤리적 판단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상 결정의 자유,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로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 즉 침묵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자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양심의 자유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도는 고문, 폭행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비전향을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므로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상전향제도는 전향서 작성이라는 강제를 통해 내심의 정신활동을 고백케 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주요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국가권력은 특정한 양심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향 여부가 보호감호 결정의 기준이 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는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울러 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 헌법의 파괴나 변혁을 주장하는 사상 및 양심도 그것이 내면에 그치는 한 억압,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 본래의 정신이라 할 때, 사상전향제도는 이러한

54) 홍경령, 84쪽.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 3) 법무부장관이 밝힌 사상전향제 폐지 이유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998년 7월 1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8월 15일 건국 50돌을 맞이하는 대사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좌의수에 대해서는 사상전향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7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sup>56)</sup>는 기고문을 통해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상을 형성하고 보유할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사상을 보유할 자유를 인정하므로 사상의 포기를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이른바 '침묵의 자유'도 양심에 자유에 포함된다. 사상전향제는 '내심의 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우를 달리하는 점에서 '양심 보유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사상전향제는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다. '유엔 인권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비인도적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셋째, 사상전향제는 그 실효성이 없다. 사상의 전향은 사람 마음속의 일로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실성 여부를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사상전향제 폐지로 안보의 허점이 생기지 않는다. '준법서약서제도'에 의해 출소 후 외부적 행동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사상범죄에 대하여는 '보안관찰법'에 의해 관찰하기 때문이다.

## 6. 쟁점

### 6.1. 전향공작 과정에서 죽은 이들도 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인가

전향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온전히 거부하고 한 사람의 전인격을 공권력이란 강제에 의해 굴복시키려는 반인권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그 행위가 반인륜 비인도적 범죄이고, 헌법과 형법에서 금지하고 고문 등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었다면, 그것에 항거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민주화 운동임에 틀림없다.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반항하고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화 운동인 것이며,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가 치벌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 국가 책임의 방기에 대해 그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 또한 민주화 운동인 것이다.

유죄를 인정받아 그 별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수형자를 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향을 강요한 것에 대한 거부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항의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폭로와 항거는 그 불법을 시정하려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은 아무리 흡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또한 반국가적 사상이나 행위를 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장기수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위반한 빨갱이들이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과연 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강제전향에 대한 항거는 우리의 민주화운동에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내면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비인간적인 강제전향에 맞서 싸운 비전향 장기수들은 바로 이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었다. 다만 우리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그분들의 역할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만 해도 반공독재의 광풍을 넘어서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즉 장기수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게 된 과정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과정이기도 했다. 또 경찰서 등에 잡혀가면 별 거리낌없이 반성문 쓰던 우리에게 장기수들은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본보기로 보여준 귀중한 선생님들이었다."<sup>57)</sup>

### 6.2. 준법서약서는 전향과 다른가

1998년 7월 1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좌의수의 사면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준법서약서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준법서약서를 지지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는가'라는 전향기준 대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는 서약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검사를 파견해 '재범 가능성'을 실직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라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제시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준법서약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말을 하였다. 98년 6월 월간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8.15 사면복권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특사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법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6월 14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양심수문제와 관련해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미리

57)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빨갱이에게도 인권이 있다」.

55)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나 법정의 공판과정에서 공안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대해 질문받고 그 답변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

문 : 용의자는 교도소 등에 재소중 전향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전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 :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자본주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

문 : 용의자는 대한민국에 충성할 의사가 없는가요.

답 : 대한민국의 현정권에 대해서는 충성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어떤 정권에 충성을 하겠는가요. (서준식, 「나의 주장 - 반사회안전법투쟁기록」, 형성사, 1989, 37-39쪽).

56) 전문, 부록 첨부자료 참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행동과 말은 대한민국을 부인하지 않고 사회질서 차원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준법서약이 석방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준법서약서의 도입은 그 법이 전향제의 또 다른 변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당사자들도 준법서약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 시작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동아일보』 1998년 7월 30일자 기고<sup>58)</sup>를 통해 준법서약서가 사상전향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상범 석방후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을 맡은 법무부로서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을 단축해 조기석방하려 할 때 최소한 석방후 재범의 개연성을 확인해야 할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 이는 법질서가 지켜지기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재야 일부에서는 준법서약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서 사상전향제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상전향제는 ‘내심’에 있는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 준법서약제도는 내심이 아닌 ‘외부적 행동’을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준법의 거부(拒否)가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경우에는 준법서약을 강제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외부적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대법원도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준법의 거부, 세청 ‘집총거부사건’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가 도입한 준법서약제도는 서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준법서약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준법서약이 사면 가석방 등 특혜를 부여할 때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우리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이며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준법서약서에 대해 민가협,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단체는 7월 1일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전향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공안사범들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전향제도의 존속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 양심수에 대하여 석방을 미끼로 서약서를 요구한다는 작태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행위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 인권단체로서 모든 정치범에게 그런 반성문을 전제로 해서 석방하겠다는 정권을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원래 전향제도가 일제의 잔재이며 전향제도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제도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재소자들도 준법서약서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상록씨의 ‘서약서 폐지를 위한 단식’이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8월 3일부터 청주교도소의 단식농성, 5일 아침부터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 8명과 양심수 3명(류락진, 장창호, 이화춘씨)의 ‘준법서약제 폐지’를 위한 단식, 이후 춘천, 강릉, 장흥, 광주, 순천교도소의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58) 박상천 법무부장관 특별기고,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 『동아일보』 1998.7.30. 전문 부록 첨부자료 참고.

“…오늘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어머니 기대에 이긋난 말을 하고 말았다. 지금 쓰고 출소해 평생을 부담을 갖고 사느니, 조금 더 있다가 나가면 더 마음 편히 살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곳 노인들 다 출소하면 그땐 나도 쓰고 나가겠다고, 참으로 말이 되어 나오기가 힘들었다. 실망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상황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2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장창호씨가 7월 30일자 편지에서 밝힌 심정이다. 또 97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홍익대생 장창준씨(92학번)는 면회온 어머니와 후배에게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이유를, “제가 수감중인 이유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해서입니다. 그런 제 생각을 준법서약서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제 후배도 걸을 텐데 후배들에게 준법서약서라는 양심의 굴레를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안재구씨는 아내의 협박 아닌 협박에 준법서약서를 썼지만, 사면되지 않았다. 준법서약서 기한인 8월 5일을 하루 넘긴 6일 제출해서 빠졌다는 게 법무부의 변명이었다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준법서약서에 “난 체제를 부정한 적 없소”라고 썼다는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한 97년 홍익대 총학생회장 정혁남씨는 “7월 말 검사가 출두를 요구했을 때죠. 출두에 불응하자 검사가 교도소로 찾아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잣대로 저를 평가하려는 것을 잘 알기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뒤 밖에서 의견이 분분했고, 계속해서 실리에 대해 고민하다가 ‘차라리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면서도, 양심을 강요한 ‘종이 한 장’의 준법서약서가 제2의 형벌 같아 양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물론 준법서약서가 또다른 전향제라는 비난을 받은 데는 그 구체적인 절차 때문이었다. 즉, 서약서 양식을 보면 ①구속사유 ②준법에 대한 의지 ③앞으로 할 일 ④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했고, 검사를 과간해 ‘재범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였다.<sup>59)</sup> 전국의 교도소에서는 검사가 준법서약서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되던 당시 심문받을 때 이상으로 취조를 받기도 했다.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최연소 장기수인 강용주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서약서를 거부하였다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sup>60)</sup>

“왜 준법서약서를 쓸 수 없는가,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생각을 개워내고 심사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 있는 편이 제 ‘양심의 법정’에서 몇몇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약서 쓰기를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사면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떠드는 무지하고 야만스런 사회, 양심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서약서는 써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천박함이 횡행하는 땅에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십오척 담 안일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준법서약서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8.15사면은 서약서를 제출한 박노해 등이 석방되었지만 서약서를 거부한 비전향좌익수들은 석방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95년 8.15 때도 세계최고의 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한창호씨도 조건 없이 석방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98년 3월 13일 특사 때도 비전향장기수 신인영씨 등 7명을 비롯해 74명의 양심수들이 석방된 적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앰네스티의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도 준법서약서에 대해 형평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였

59) 부록, 첨부자료 참조.

60) 전문, 부록 첨부자료 참고.

다.

“준법서약서와 전향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겠다. 우선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준법서약서가 필요하다면 왜 일반사법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둘째로 양심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하며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기준에 어긋난다고 본다.”<sup>61)</sup>

8월 15일 사면 이후 법무부는 안기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10월 10일 개정하였다. 기존의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던 것을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원관계의 심사사항(4조)에 ‘사상 및 신앙’을 남겨 두고 있어 준법서약서가 여전히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14조(심사상의 주의) 2항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기존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준법서약서는 9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1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 17명이 포함되어 석방됨으로써 준법서약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은 1999년 8월 13일 준법서약서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은 거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1999년 11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한 한국의 2차 보고서(91-95년의 인권상황)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점은 환영하나 준법서약제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법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그 종이 한 장의 의미」<sup>62)</sup>에서 준법서약서와 전향서의 동일성과 차별성에 대해 전향서는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는 것임에 비해 준법서약서는 단순히 법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각서에 다름아니니 큰 진전이 있다고 말하나, 사실상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는 점에서 그 남용이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첫째,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간에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둘째,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에도 전향서라는 이름만으로 양심의 강제를 하지는 않았다. 각서, 생활계획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상의 전향과 사상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준법서약서 역시 사실상의 전향과 다를 것이 없다. …

셋째, 전향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한정해서 강요했던 것에 비하여 준법서약서는 모든 시국사법

61) 「특별인터뷰/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한겨레21』 1998.9.24.

62) 출처 확인해야 함???

에 확장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향서에 비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상이 훨씬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넷째,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는 다같이 개인사에 대한 최소개입의 원칙, 상대적 다양성의 원칙을 최고 원리로 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것인 반면 개인의 사상과 신념까지 국가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적 국가주의와 봉건적 관료주의의 소산이다. … 전향제와 준법서약서는 끊임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심사하고 국가가 동의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다짐을 받아들어야만 안심하는 국가주의자들의 반민주주의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남민진으로 감옥살이를 한 김남주도 전향에 대해 시를 남겨 놓았다.

전향을 생각하며

총칼의 숲에 싸여  
눈감고 아웅하는 꼭두각시 놀음  
나는 나의 최후를 놈들의  
법정에서 장식하고 싶지 않았다.  
놈들이 과놓은 굴속 같은 방  
나는 내 최후의 그림자가 감옥의  
벽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동지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놈들의 총칼 앞에 무릎이라도 끓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혁명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허리 굽혀 놈들의 발 밑에 엎디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것이었다. 살아남아 대지와  
민중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꺼안는 것이었다.  
보기 흉한 패배에  
옛 상처의 무기에 임맞춤하고  
다시 한번 칼자루를 잡는 행복으로  
자유를 잡아보는 것이었다.

서른 일곱의 어찌지도 못하는  
이 기막힌 나이 이 환장할 청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덤을 지키는 지조 높은 선비는 아니다.  
나에게는 벗이여  
죽기 전에 걸어야 할 길이 있다.  
싸워야 할 사랑이 있고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있다.  
기대해다오 나의 피 나의 칼을  
기대해다오 투쟁의 무기 나의 노래를.

첨부자료1. 사상전향 약사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이해  
첨부자료

1. 사상전향 약사	/ 43
2. 사회안전법	/ 50
3. 사회안전법시행령	/ 55
4. 사회안전법시행규칙	/ 61
5. 사회안전법에 관한 현법소원	/ 78
6.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현법소원(92.2.15제기, 1995.5.25.결정)	/ 81
7. 현행 전향 관련 법령	/ 84
8. 과거 전향관련 법령조항	/ 86
9. 사상전향 관련 교정예규	/ 93
10.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현행법 및 국제조약 조항	/ 106
11. 사상전향제 폐지를 말한다/박상천 법무부장관/[동아일보] 1998-07-30	/ 111
12. 강용주의 '내가 준법서약서를 안 쓰는 이유'(98. 8. 15)	/ 112

연도	조선	일본제국주의 등
19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합 직전 집회취체법 - 정치집회 금지, 단체 해산</li> <li>· 1910년 8월 22일 조선총독부 설치</li> <li>- 헌병경찰제 의병 토벌, 첨보 수집, 범죄즉결처분권, 강제 집행권, 민사소송조정권 등 87개 권한</li> <li>· 1912년 3월 25일 부령 40호 '경찰법 치별 규칙'</li> <li>- 면회강성, 단체가입 강성, 불온 연설, 불온 문서, 도화 기가의 게시, 반포, 낭독, 방음행위, 유언비언 및 허보 유포에 대한 치별 규정(1912년 5만 2천건에서 1918년 14만 2천건)</li> <li>· 1919년 4월 15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li> <li>-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하려고 한 자의 치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4년 고등경찰조직</li> <li>· 1911년 특별고등경찰조직(특고)</li> <li>· 1917년 러시아혁명</li> </ul>
19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년 4월 19일 조선노동총동맹 결성</li> <li>·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결성</li> <li>· 1925년 5월 28일 칙령 175호 치안유지법을 조선·대만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 부칙에 의해 12월에 실시</li> <li>· 1928. 여름, 독립수비대, 고등계 경찰(사상단암 전문), 사상검사를 재판소마다 배치</li> <li>- 요시찰인에 대한 사생활 감시, 경찰서장에게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 2. 과격사회주의운동취체법안 제국의회에 제출</li> <li>- 귀족원특별위원회 원안 수정, 중의원에서 통과 못함</li> <li>· 1922. 7. 15. 일본공산당 창당</li> <li>· 1923년 공산당 제1차 검거,</li> <li>· 1923. 9. 관동대지진 - 백색테러</li> <li>· 1923년 9월 9일 치안유지령(칙령 제403호)</li> <li>- 광동대지진이 일본인 및 조선인 무정부주의자의 소행으로 조작하여, 긴급 칙령으로 공포</li> <li>- 1924년까지 범죄선통죄 기소 4건, 치안방해사행유포 기소 11건, 유언비어 죄로 기소 5건에 불과.</li> <li>· 1924. 일본공산당 해체</li> <li>· 1925년 4월 22일 치안유지법 공포, 5월 12일 시행</li> <li>-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을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가입한 자, 및 미수범 치별</li> <li>- 혐의, 선동 및 편의제공도 치별</li> <li>· 1926년 치안유지법 최초로 적용</li> <li>- 군사교련 반대전단 동지사대학 구내에 살포</li> <li>- 경도학운사건으로 1월 15일부터 4개월 동안 38명의 학생을 검거</li> <li>· 1926. 12. 4. 일본공산당 재건</li> <li>· 1928년 3.15사건</li> <li>- 노동농민당, 전일본무산청년동맹 등 공산당과 관계 있는 단체 사무실 일제수사 실시</li> <li>- 당원 약 1,600명 검거</li> <li>· 1928년 6월 29일 치안유지법 개정</li> <li>- 목적수행행위에 대한 치별 규정 신설</li> <li>- 정역 10년 이하--&gt;사형 신설(반체제운동세력에 대한 사형 부과 가능)</li> <li>· 1929. 세계 대공황</li> </ul>

연도	조선	일본제국주의 등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31. 3. 27. 사법차관 통첩 제270호 사상전향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유지법 위반자 처리방법의 하나</li> <li>- 3.15 사건 이후 검거자 수 수천명 증가</li> <li>- 1931. 7. 가식방심사규정</li> <li>- 1933. 6. 일본공산당 최고급 간부 사노(佐野學), 나베야마(鍋山貞親) 전향서 발표</li> <li>- '공동피고인에게 알리는 글' 형태로 코민테른 거부, 일국 사회주의 건설 주장</li> <li>- 이후 전향률, 1933년 7월말까지 미결수의 30%, 기결수의 30%가 전향(사법성 조사), 이후 1년반만에 90% 전향.</li> <li>- 1934. 1. 행형누진처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자 1급~4급 분류</li> <li>- 1급에게 가석방의 은전 부여</li> <li>- 사상법은 전향자에게만 적용</li> </ul> </li> <li>- 1936년 5. 사상법보호관찰법 제정</li> <li>- 사상전향체계 완성</li> </ul> </li> <li>· 1928~1935. 치안유지법 사건 검거자 16,000명, 보호관찰 적격자 6,400명</li> <li>· 1933~1938. 보호관찰처분 적격자 8천명</li> <li>· 1936. 12. 제령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li> <li>- 보호관찰 결정은 법원이 아닌 사상법보호관찰심사회</li> <li>-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에 보호관찰소 개설</li> <li>· 1937. 7.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처분 20%인 1,504명</li> <li>- 보호관찰소에서 국체의 본의 제득, 사상전향 강요</li> <li>· 1938. 7.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소 외곽단체</li> <li>- 기관지 '사상보국' 발간, 신사참배, 황군위문, 국방헌금 등</li> <li>- 일본정신연구회, 사상전향자좌담회, 국책강연회 등 개최</li> <li>- 1940. 7개지부, 72개 분회, 3,300여명의 맹원이 가입</li> </ul> </li> <li>· 1937. 중일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국대응전국위원회 결성</li> <li>- 전향자 단체</li> </ul> </li> </ul>	

연도	조선	일본제국주의 등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0. 12. 사상보국연맹 해체</li> <li>· 1941. 1. 대화숙 건립(사상보국연맹 후신)</li> <li>-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li> <li>- 보호관찰소의 외곽 단체, 보호사와 침식, 군대식 기율로 황민훈련(=&gt;전향공작전단 교회사의 전신)</li> <li>- 1943년 91개 지부 5,400명 회원</li> <li>· 1941. 12. 조선사상법 예방구금령 공포, 3.1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구금소 : 경성에 조선총독부보호교도소 설치</li> <li>- 치안유지법 위반자, 일반사회와 격리</li> <li>- 철저한 훈련교화, 사상의 개선, 교정 및 황국신민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1. 3. 8. 치안유지법 2차 전면 개정</li> <li>- 2~4. 결사지원, 준비결사, 차별 가능</li> <li>- 사상법에 대한 공소심 생략, 변호사 선임권 제한</li> <li>- 3장 예방구금 신설, 5월부터 시행</li> <li>- 검사, 사상법용의자 직권으로 구류에 처할 수 있는 검사 구류제도 신설, 3개월마다 갱신 가능, 회수 제한 없음- 무한적 인신 구속으로 전향 강요</li> <li>· 1941년 태평양전쟁</li> <li>· 1942. 8. 각의, 비전향 사상법에 대한 예방구금 결정</li> <li>· 1943년 사법성 발표</li> <li>- 총 2,440명의 공산주의자 중 1,246명 전향, 1,157명 준전향, 37명 비전향</li> <li>· 1945. 10. 4. 미점령군 총사령부 '정치적, 시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철폐에 관한 각서'에 의해 치안유지법의 폐지가 지시되고, 10. 10. 정치인 3,000명 석방, 10. 15. 칙령 제575호의 의해 폐지된다. 사상전향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li> </ul>

연도	대한민국	비고
194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5. 11. 2. 군정법령 제21호 보안법, 신문지법 존속.</li> <li>- 일제 탄압법률 계승. 좌익 탄압, 우익 보호</li> <li>· 미군정기에는 전향서의 작성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털당형식으로 처리.</li> <li>· 지도급 인사는 탈당성명을 신문광고란에 실는 형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6. 2. 23. 군정법령 제55호 정당등록제 도입</li> <li>· 1946. 5. 4. 군정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li> <li>- 미군, 미국인에 대한 무례 행위도 처벌</li> <li>· 1947. 남로당 불법화</li> </ul>
194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 12. 1. 국가보안법 제정</li> <li>· 1949.5.20. 국회프락치사건</li> <li>· 1949. 6. 4. 국민보도연맹 결성</li> <li>- 남로당 탈당자, 외곽단체인 전평, 여맹, 민청 등에서 탈퇴한 사람 강제 가입</li> <li>- 단순동조자(예, 빨치산에 끌려가 부역한 사람)이 대다수 차지함</li> <li>- 6.5. 중앙본부 결성. 1950년 3월 철도노조 조합원 5천여명이 가입하면서 1단계 조직사업 마무리, 당시 맹원수 35만명.</li> <li>· 1949.12.19. 국가보안법 1차 개정</li> <li>- 사형 가능토록 최고법정형 상향조정. 단심제</li> <li>- 사상전향 가능자에게 선고유예와 보도구금 실시</li> </ul>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연합 조선위원회 '국보법으로 1949년 한해동안 118,621인 검거, 투옥,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 해산'</li> <li>· 1950.4.21. 국가보안법 2차 개정</li> <li>- 단심제 폐지</li> <li>· 1950. 6. 25. 한국전쟁</li> <li>- 전쟁시기에는 전향강요는 없었음.</li> <li>- 국민보도연맹원 학살(30여만 명 추정)</li> <li>· 휴전협정 이후</li> <li>- 형화정 좌익수 전향서 작성 강요 없음</li> <li>- 좌익의 지도급인사, 진술서 또는 자서전 작성 요구</li> <li>· 1955. 2. 15. 대전교도소 '이일호사건'</li> <li>- 당시 500여명 수감, 좌익수들의 탈옥예비 음모사건</li> <li>- 이 사건 이후 목포 이감자, '전향서' 인쇄용지에 전향서 작성 강요반응</li> <li>- 전주형무소, 이일호사건 무렵 전향서 작성 강요</li> <li>- 1955. 서대문형무소 신축, 공주, 군산 등에서 300명 이감, 백지에 전향서 작성 요구, 비전향 200명 분류, A급 특별사동 독거수용, B급 특별사동 혼거수용, C급 일반재소자와 혼거수용</li> <li>· 1956. 4. 6. 법무부장관 '좌익수형자동태조사 보고에 관한 건' 예규통침</li> <li>- 전향, 미전향을 기재하여 3개월에 1차씩 보고토록 함(극비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li> <li>* 전향, 미전향에 대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문건.</li> <li>· 1956. 10. 29. 제정 '가석방심사규정'(법무부령)</li> <li>- 7조에 사상 전향 여부를 심사하고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토록 하였다.</li> <li>* 전향을 서류로 발표토록 하는 최초의 규정</li> <li>· 1958.12.24. 국가보안법 3차 개정</li> <li>- 무술경관을 동원 야당 국회의원 감금(24과동)</li> <li>- 인심혹란죄 신설--&gt;경향신문 폐간, 기자 국보법 구속</li> <li>· 1959. 12. 15. '좌익수형자 사상동태 조사표 제출에 관한 건'</li> <li>- 60년부터는 1개월에 1차씩 보고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8.11. 진보당 조봉암 당수 등 체포</li> <li>· 1959.2.16. 대법원 사형 확정</li> <li>· 1959.7.31. 사형집행</li> </ul>

연도	대한민국	비고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 4.19혁명 이후 감형조치</li> <li>- 무기수(간첩죄 제외)는 20년으로 감형, 15년 이하 중에 전향자 전원 석방, 비전향자 잔형기의 1/3~2/3 감형</li> <li>· 1960.6.10. 국가보안법 4차 개정</li> <li>- 불고지죄 신설</li> <li>· 1961.7.3. 반공법 제정</li> <li>· 1961. 7.29. 제51회 각의, 좌익미전향수형자 집결 수용을 의결하여 약 800명을 대전교도소 수감시킴</li> <li>· 1961. 8.25. 각 교도소 중정의 의뢰로 미전향 및 전향자의 신상기록을 작성함.</li> <li>- 12.27.까지 좌익수 현황조사에 대한 예규를 3차례 더 보내고 있다.</li> <li>* 중앙정보부가 좌익수에 대한 신상파악을 시작으로 사상전향 사업을 맡게 된다.</li> <li>· 1962.4.27. 귀향시행규칙 제정</li> <li>- 6조 전향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전향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li> <li>· 1963.4.3.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li> <li>- 5단계별 심사기간 및 조치(1단계 반성촉구, 2단계 전향공작, 3단계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 4단계 전향심사, 5단계 전향문 발표)</li> <li>* 전향공작 체계화</li> <li>· 1963. 6.25. 좌익수형자는 석방 2개월전에 각 관계기관에 통보</li> <li>· 1964. 1. 11. 법무부 예규 제5호 '좌익수용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추가 지시'</li> <li>- 제4단계 전향심사에 중앙정보부 관계관을 참여도록(중앙특수수형자교화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li> <li>· 1966. 12.21. 좌익수형자에 대한 요시찰인 카드 작성(중앙정보부장 의뢰)</li> <li>· 1968. 4. 6. 좌익수의 이송, 사면, 감형, 가석방, 귀향, 징벌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지구 대공분실에 즉시 보고.</li> <li>· 1968. 4. 17. 각의, 미전향 좌익수형자 분산 수용에 관해 의결하고, 각 교도소별로 분산 수용. 적의 집중 공격목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li> <li>· 1968. 4. 27. 법무부 예규 제139호 '좌익수형자 수용'</li> <li>- 사상전향 여부 불문하고 형화정 당시 수용된 교도소로 분산 수용</li> <li>· 1968. 7. 26. 좌익수 석방 4개월전에 관계기관에 통보로 바꿈.</li> <li>· 1969.5.13. 교정누진처우규정 제정</li> <li>- 제2조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D급 금외로 배제시킴.</li> <li>· 1969.5.21. 영등포, 인천, 목포, 군산, 의정부, 소록도지소는 적의 계릴라 기습 등의 우려가 있다는 중정 및 내무부의 통보가 있으므로 대전, 대구, 광주, 전주 분산 수감(1985년 안동교도소 신축후에 포함)</li> <li>· 1969. 11. 25. 좌익수형자 사상전향 심사방안 시달(기존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과 동일)</li> <li>· 1969.12.1. 좌익수형자에 대한 전향공작 철저-- 좌익수형자 교화방안을 시달하니 본방안에 의거 과감하고 효과적인 전향공작을 시행할 것.</li> <li>- 전향자, 치우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 5.16. 군사쿠데타</li> <li>· 1961. 6.10. 중앙정보부법 제정, 부처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li> <li>· 1963. 12. 중앙정보부, 대통령 직속기관</li> <li>· 1964. 8. 인혁당사건</li> <li>· 1965.1.26. 월남파병 국회 동의, 2월 비둘기부대 파병</li> <li>· 1967. 7. 동백립사건</li> <li>· 1968. 1. 21. 청와대 습격사건</li> <li>· 1968. 1. 23. 프에블로호사건</li> <li>· 1968. 9. 통일혁명당사건(18명 검거)</li> <li>· 1968.10.30.~11.2.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li> <li>· 1969. 10. 21. 3선개헌</li> </ul>

연도	대한민국	비고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1.21. 죄의수의 죄질별 분류</li> <li>- 전향/미전향 우선 분류, 죄질에 따라 ABC급</li> <li>- 분류급별로 분리 수용</li> <li>- 완전전향 죄의수, 심리전의 성과를 거두도록 가석방 활용</li>   <li>- 1972.1.12. 전향 죄의수형자 동태사찰방법 시달</li>   <li>- 1973. 3. '전향공작전담교회사' 공개 채용, 당시 전국에 500명 정도 비전향죄의수</li> <li>- 1973.3.29. 죄의수 전향공작 업무에 관한 유의사항 시달</li> <li>- 1973. 6. 6.23선언 '평화통일 외교정책'</li> <li>- 1973. 8. 2. 법무부예규 제108호 '죄의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li> <li>- 심리전 교육을 이수한 교회직 배치</li> <li>- 반장 교무과장, 담당관은 3급율류 교회직. 급별 담당책임제</li> <li>- 매주 1회 전담반 회의, 공작성과 분석, 효율적인 공작방안 모색 등</li> <li>- 중장 기관원이 각 교도소에 파견, 전담반 관리</li> <li>- 일반 재소자 중 살인, 강도, 상해범들을 전향공작에 동원</li>   <li>- 1973.11.8. 전향 죄의수형자 추수선도 강화 시달</li> <li>- 전향 죄의수가 전향을 취소한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li>   <li>- 1975.7.16. 사회안전법 제정. 민방위기본법, 방위세법, 교육관계법 개정안 등 4대 전시입법 날치기통과</li> <li>- 4.19 이후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죄의수들 만기출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li> <li>- 일제의 조선사상법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법에방구금령을 이어받은 사상통제 장치</li> <li>-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 목적</li> <li>- 사상전향 여부 등을 3개월마다 검사에게 보고</li> <li>- 검사의 청구, 보안처분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을 부과.</li> <li>- 국보법, 반공법 위반한 사상범에게 전향 강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무한정 구금</li> <li>-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그 적용대상 확대</li> <li>- 1989년 6월 16일 천연 개정 및 명칭변경으로 폐지. 128명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청주보안감호소에 구금</li>   <li>- 1977.1.29. 죄의수 전향공작 업무에 관한 유의사항</li> <li>- 교도관의 연행 조심(사회안전법 등), 새로운 공작기법을 연구하여 보고, 심리전용 차량관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8. 박대통령 '평화통일 구상' 선언</li> <li>- 1970.11.13. 전태일 분신자살</li> <li>- 1971. 10. 15. 위수령 발동</li> <li>- 1971. 12. 6. 국가비상상태 선언</li> <li>- 1971.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동</li>   <li>- 1972. 5. 이후락/박성철 남북 각기 방문</li> <li>- 1972. 7. 4. 남북 공동성명</li> <li>- 1972.10.17. 10월 유신-비상계엄령, 국회 해산, 정당 해산</li> <li>- 1972.11. 남북조절위원회 개최</li> <li>- 1972.11.21. 유신헌법 국민투표</li> <li>- 1972.12.23.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8대 대통령 당선, 27일 취임</li>   <li>- 1973.8.8. 김대중남치사건</li> <li>- 1973.9. 구라파거점 간첩단 사건</li>   <li>- 1974.1.8. 긴급조치 1호 발동-유신헌법반대 금지 등</li> <li>- 1974.4.3.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력/인혁당 탄압 근거 -학교폐교권 포함</li> <li>- 1974.4. 인혁당재건위사건</li> <li>- 1974.8.15. 육영수 피살</li> <li>- 1974.8.23. 긴조 1호, 4호 해제</li>   <li>- 1975.4.8. 고대 석탑선언문 사건 관련 -고대휴교 등</li>   <li>-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 발동(1-7호 집대성)</li>   <li>- 1979. 10. 남민전사건</li> <li>- 1979.10.26. 박정희 사망</li> </ul>

연도	대한민국	비고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 12. 31. 반공법 폐지, 국가보안법에 흡수</li>   <li>- 1983. 12. 5 법무부 '죄의수용자 등 사상전향 공작업무 처리요강'</li>   <li>- 1988. 5. 25. 비전향 최초로 서준식 석방</li> <li>- 1989. 5. 29. 사회안전법 폐지, 보안관찰법 제정</li> <li>- 52명이 전향을 거부하고 복역(총 5,476년 복역, 평균 29년)</li> <li>- 보안감호 중 16명 사망</li> <li>-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중 보안감호처분 및 주거제한 폐지, 보호관찰처분을 유지 강화</li>   <li>- 1992. 4. 22. 현재, 비전향 장기수 44명</li> <li>- 1992. 5.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li> <li>- '반국가단체' 중 지본주의 국가내의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와 그 지도당 삭제</li> <li>- '반국가단체'에 지휘통솔체계를 명시</li> <li>- 이적행위 처벌에 '목적' 요구</li>   <li>- 1998.8.1. 법무부장관 사상전향제도 폐지 공식 천명, 준법서약서 도입</li> <li>- 1998. 8. 15. 준법서약서 쓴 양심수 석방</li> <li>- 1999.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서 없이 전원 석방</li>   <li>- 2000.9.비전향장기수 63명 북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 10. 27. 제5공화국 출범</li> <li>- 1981.1. 중앙정보원=&gt;국가안전기획부</li> <li>- 1982.11. 모국방문 가장 계일교포 간첩단 13명 검거</li> <li>- 1982.11. 전두환 안기부 방문</li>   <li>- 1989. 4. 4. 공인합동수사본부 설치</li> <li>-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공안검찰 총집결</li> <li>- 한달만에 350명 구속, 215명 불구속, 출판물 11,471권 압수, 86명 수배</li> <li>- 1989. 12. 4. 평민당, 국보법 대체법안으로 민주질서보호법안 제출</li>   <li>- 2000.6.15. 남북정상회담</li> </ul>

## 첨부 2. 사회안전법

### 사회안전법

[제정 1975.7.16 법률 제2769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처분의 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처분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또는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4.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다만, 제4조제2항중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습득하는 죄는 제외한다)

제3조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처분
2. 주거제한처분
3. 보안감호처분

제4조 (보호관찰처분) ①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리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주거제한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

②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이 주거제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을 받을 자가 결정당시 거주하는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④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⑤주거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보안감호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자중 주거제한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주거제한처분에 위반한 자

②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장소, 수용교화·감호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안처분의 면제) ①법무부장관은 보안처분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면제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반공정신이 확립되었을 것
2. 면제결정일 전 3년내에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원보증이 있을 것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내에 보안처분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보안처분대상자의 정장을 삼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면제결정을 받은 자가 그 면제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면제결정과, 면제결정청구·면제결정취소청구 및 그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보안처분의 기간) 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9조 (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보안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류치장·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20일내에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 ①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동행보호) ①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는 7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법경찰관리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안처분대상을 동행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사법경찰관리가 보안처분대상을 검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보안처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동행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 감호처분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속동행보호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호와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안처분의 청구) 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제13조 (청구의 방법) ①보안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처분청구서(이하 "처분청구서"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 · 심문 · 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 · 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제15조 (보안처분심의위원회) ①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처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장이 되고, 위원은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법관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이 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2.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3. 보안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⑪위원회의 운영 · 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리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 · 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 · 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 ①보안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결정서) 결정은 리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서 행한다.

제19조 (결정의 취소 · 변경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미 결정된 보안처분의 취소, 종류의 변경, 조건의

변경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는 보안처분청구 및 심사,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보안처분의 무효판결등) ①법원은 제20조의 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그 결정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만, 보안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령에 위반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환송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송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0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0조와 동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보안처분의 집행지휘) ①보안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형과 보안처분의 집행순서) ①징역 · 금고 · 구류 또는 로역장류치의 집행을 받거나 징역 · 금고 · 구류의 형이 확정되고 그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집행한다.

②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징역 · 금고 · 구류 또는 로역장류치의 집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보안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그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간의 계산) ①년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렉션에 따라 계산한다.

②보안처분의 기간은 보안처분결정을 집행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③보안처분에 위반한 기간은 보안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징역 · 금고 · 구류 또는 로역장류치의 집행중에는 보안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①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군법회의검찰관은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의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은 보안처분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사안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검사는 보안처분대상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된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사안을 국방부장관 또는 군법회의검찰관에게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심사 또는 조사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27조 (벌칙) ①정당한 리유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집행자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보안처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보안처분대상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⑤보안처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7조의 신원보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처분대상자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루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8조 (시행령) 보안처분의 청구·심사·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절차 기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2769호, 1975. 7. 16>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적용에 있어서 보안처분대상자로 본다.

1.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구형법 제77조 내지 제79조 또는 제81조 내지 제88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내지 제5조, 법률 제10호 구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4조, 법률 제85호 구국가보안법개정법률 제1조 내지 제5조, 법률 제500호 구국가보안법 제6조 내지 제25조와 제28조(다만, 제17조 제4항중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습득하는 죄는 제외한다), 구국방경비법 제32조 또는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또는 제9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항제2호에 게기된 죄를 범한 자로서 이 법 시행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③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로 된 자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출소일로 보되,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후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부칙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한다.

1980. 12. 31. 개정

#### [전문개정] 이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그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으므로 반공법을 폐지하여 이를 국가보안법에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하는 범죄의 처벌·예방에 일원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으로 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로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도 반국가단체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

②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허위사실 날조·류포등 행위의 처벌규정을 두도록 함.

③반공법을 폐지함.

#### 첨부 3. 사회안전법시행령

[제정 1975. 7. 16 대통령령 제7696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보호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피주거제한자"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감호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교도소 등"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유치장·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말한다.
5. "보안처분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항제2호에 게기된 죄"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피보호 관찰자의 신고)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월수·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②피보호관찰자는 매 3월에 1회씩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피보호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보호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정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관찰) ①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 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에 필요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주거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것.
2. 죄를 다시 범할 우려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말 것.
3.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소유·보관 또는 소지하지 말 것.

4.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 또는 일정한 집단의 자와 통신·회합하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③관찰경찰서장은 보호관찰부를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동태보고 등) ①관찰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찰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때.
3. 주거지를 이전한 때.
4.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게 된 때.
5.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6. 사망한 때.
7. 보호관찰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때.
8.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관찰경찰서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주지 또는 행선지의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찰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전주지의 관찰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전주지의 관찰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이전의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제한의 범위)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는 피주거제한자가 주거제한처분결정당시 거주하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속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피주거제한자의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피주거제한자의 출입허가) ①피주거제한자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출입지역·출입소요일수를 기재한 출입허가신청서를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찰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피주거제한자에게 출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지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역의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한 후 3일이상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의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을 마치고 주거지에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피주거제한자의 신고 등) 피주거제한자의 신고·보호관찰·동태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안감호) ①피보호관찰자는 보안감호소에 수용하여 교화, 감호한다.

②피보호관찰자의 수용·교화·감호에 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동태보고 등) ①보안감호소의 장은 매3월마다 피보호관찰자의 동태·건강상태·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게 제5조제2항제1호·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도주 또는 보안감호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를 출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소 2월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후의 거주 예정지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처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관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공정신을 확립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표,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관찰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내에 지문조회결과 통보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면·동·리·통·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검사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도소 등의 장은 그 중 1부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관찰경찰서장에게,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3.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4. 출소후의 생활계획.
5. 출소후의 동거가족.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출생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병역관계.
8. 해외여행관계.

9. 신고인이 범한 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의 요지.
  10. 판결법원, 판결년월일, 죄명, 형명, 형기.
  11. 출소교도소등의 명, 형집행기간, 출소년월일 및 출소사유.
  12. 보안처분해당범죄 이외의 전과사실.
  13. 기타 필요한 사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6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찰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관찰경찰서장은 접수한 신고서 6부 중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 의무의 고지)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 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훈계하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미리 제12조제2항제1호·제10호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를 그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찰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찰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소정기한내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안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찰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처분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 (지휘감독) 검사는 법의 집행에 관하여 경찰서장, 법 제10조의 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도소 등의 장 및 보안감호소의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2.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요구.

제18조 (동행보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을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을 동행보호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위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동행보호서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동행보호할 장소,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보안처분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고, 보안처분대상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안처분대상을 동행보호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보안처분대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동행보호한 일시와 장소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가 동행보호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보안처분대상을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소에 보호하여야 한다.

⑦동행보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안처분 청구서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보안처분 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행보호 일시와 장소(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의결)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청구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변상) ①위원회의 위원장·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결정서의 기재요건) 보안처분결정서에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정의 고지) 보안처분 결정의 고지는 검사에게 결정서 동본을 송달하여 검사로 하여금 피청구자에게 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상호통보) 보안처분대상자 또는 피보호관찰자·피주거제한자 또는 피보안감호

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은 상호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696호, 1975.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보안감호소 및 동행보호소가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등을 보안감호소 및 동행보호소로 대용할 수 있다.

#### 첨부 4. 사회안전법시행규칙

[제정 1975. 7. 21 법무부령 제191호 법무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사안”이라 함은 “보안처분청구·보안처분취소청구·보안처분변경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보안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보안처분기간갱신청구 또는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경찰청경찰서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③ “조사”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④ “용의자”라 함은 “보안처분대상자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⑤ “위원회”라 함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제2장 보안처분과 그 면제

제3조 (문서양식)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시행령 제3조제5항, 제8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제5항, 제8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경찰서장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교도소등의 장이 보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영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서, 이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품신서,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부,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신청서,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증,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서,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보고서,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9조제2항,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피보호관찰자의 신고) ①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지파출소장에게, 1부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지·파출소장과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접수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여행사유·행선지·경유지출발 및 도착일시·동행자와 여행중의 주요 활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피보호관찰자가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여행사유·행선지·경유예정지·출발 및 도착예정일시·동행예정자와 교통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관찰) ①관할경찰서장이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보호관찰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직업·성명·생년월일과 지시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시품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